

제409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8월17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2)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1)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8)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8)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6)
8.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1)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1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1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1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20.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9)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3)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3)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7)
3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8)
3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0)
3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3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3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4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

상정된 안건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2) 3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1) 3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8) 3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3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8) ... 3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3
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6) 3
8.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1) 3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 3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3
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3
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3
1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3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3
1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3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 3
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3
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3
1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3
20.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3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3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3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 3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4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4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 4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 4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 4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 4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9)	4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3)	4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3)	4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7)	4
3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4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8)	4
3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0) ...	4
3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4
3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4
3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4
4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	4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2)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1)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8)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8)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6)
8.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1)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1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1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1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20.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45)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941)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802)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090)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257)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582)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819)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993)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243)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7)
3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8)
3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0)
3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3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3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
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4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
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4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잠깐 이것 다 하
고 나서 드릴게요.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결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설훈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다고 했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설훈 위원 의사일정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
다.

오늘 의사일정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번으로 해서 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이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약속하기를 월남전 참
전자 전투수당 관련 법안을 제일 먼저 심의하겠
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간에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
당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미뤄 왔었습니다. 본
위원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
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소위에
서는 제1번으로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왔었는데 이게 지금 빠
져 있는 상태입니다,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합
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관련
법안을 먼저 심의하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군인사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등을 심의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설명을 좀 부
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원래 오늘 안건 중에 월
남전 관련 설훈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빠져 있었
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법안소위가 오늘하고 내
일 이틀이었는데 2일 차에 반영이 되다가 2일 차
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하루로 하다 보
니 빠졌었지요.

그래서 어제 설훈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
서 여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설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우리 소위
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상정을 해서 토의하는 것
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법안
소위에서 파행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당 위원인 이채익 위원님부터 성일종 위
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법안을
올릴 때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하고 순위나 이
런 것도 어느 정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태에서
해라, 위원장 혼자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는 그것은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해서 이 법안소위에 올릴 것을 상정하는 것도 다 합의했고 순위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1일 차, 2일 차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빠졌는데 설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어제 저녁에 급히 야당 간사와 합의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든 토의는 해야 된다고 했고 여당 간사인 신원식 위원도 동의를 해 주고 한기호 위원장님께서도 기꺼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제 속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은 순서대로 하되 우리 소위 위원들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훈 위원이 발의한 그것은 오후에 끝날 때 한 4시 정도에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국방부나 기재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그것을 하다 보면 오늘 상정한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오늘 논의를 꼭 할 테니까 그것은 양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오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당을 설득시킬 때도 올리되 처음에 하게 되면…… 여당 간사들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그래서 앞에 꼭 논의돼야 되는 것들한 30건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그렇지만 설훈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4시쯤 하는 걸로 그렇게 여당에 설득을 시켰고 신원식 간사님께서도 그것을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설훈 위원님께는 저희들이 그때 소위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순위 문제에서 못 지킨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정도는 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이 상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자체가 오늘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꽤 오래됐고 국방부와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결정만 하면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

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방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가 다 끝났고 보상 액수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당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전투수당을 안 주고 다른 비용으로 썼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것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동의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미룬 사실이 아닙니다. 근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더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오늘 4시에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시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오후에 속개를 할 때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서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시작할 때는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보상특별법안을 논의하고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설훈 위원님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본인이 낸 법안이기에 때문에 통과시키고 싶은 의지는 어느 위원들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18대부터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대에서도 검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내가 낸 법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면 여야가 뭐가 필요 있고 여기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서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집하시는 건 과합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것에 대한 검토를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월남참전전우회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와서 그분들이 한 얘기는 제가 이따 법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그 기준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제든 우리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소위원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설훈 위원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 1번으로 해야 된다, 오후에 1번으로 해야 된다……

○설훈 위원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까지 상의할 정도의 중요한 의안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해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미룹니까?

○한기호 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훈 위원 미룬다는 것 자체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한기호 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다니까요.

○설훈 위원 해야 하지만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한기호 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훈 위원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검토한다니까요.

○설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협안을 내놓은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올리지도 않은 걸 어제 저희가 넣었지 않습니까?

○설훈 위원 아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어제 넣었지 않습니까?

○설훈 위원 어제 넣었더라도 순위를 제일 먼저 올리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대로 해야지요.

○한기호 위원 누가 제일 먼저 올린다고 그랬어요, 다음 회의에 한다고 그랬지.

○설훈 위원 위원장하고 합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당시에 도.

○설훈 위원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알고 계신다

니까 더욱더 할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기호 위원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설훈 위원 왜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알지요! 저보다 더 알다니!

○소위원장 김병주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 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여기 소리 지르는 데 아닙니다.

○설훈 위원 소리 안 지르게 지금 왜 있습니까?

○한기호 위원 왜 소리 지르십니까?

○설훈 위원 왜 한기호 위원만 반대하십니까?

○한기호 위원 누가 저만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그만……

○설훈 위원 반대 안 하시면은……

○한기호 위원 누가 그러니까?

○설훈 위원 심의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심의를 오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훈 위원 아니,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한기호 위원 억압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설훈 위원 누가 억압적으로 합니까? 이 사안 자체가 오후 4시부터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오후 첫 의제로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논의하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설훈 위원 제 의견이 부당한 이야기입니까? 제 의견이 터무니없이 그냥 억지 부리는 겁니까? 1번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제가 양보를 해서 오후 심의 첫 번째로 하자는데 그게 틀렸단 말입니까?

○한기호 위원 1번으로 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했습니까? 당시에 도 동의 안 했습니다. 그다음 회의에 한다고 했지.

○소위원장 김병주 설훈 위원님 제가……

○설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한다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야 합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야 어제 합의한 것은 진짜로 이것은 여당이 많이 양보해 줬습니다. 오늘 안건에 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훈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설명을 한 참 밤늦게까지 해서 올렸고, 그랬더니 오늘 논의는 하되 이 의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오늘 그대로 순서대로만 하면 못 할 확률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에는 다른 법안을 제치고라도 할 테니까 그것까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조차도 파행된다는 건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첫 번째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파행이 되지 않고 원만히 법안소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야를 충분히 설득했고 설훈 위원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오늘 논의는 한다, 4시에 하는 걸로 여야 합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 여야 합의한 대로 안 한다면 이것이 또 파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 밀려 있는 법안이 300개가 넘습니다. 오늘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30~40개는 해야만 되고 또 이것은 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님께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양해하고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휴식 시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교 등 군인의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에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

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10조의 군인의 결격사유입니다.

먼저 군인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으로 최근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죄 및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한 바 있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다른 현행법 개정으로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 제10조의2는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조문으로 군인의 결격사유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다음 쪽,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의 제적 사유에도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서 검토보고한 군인의 임용 결격 사유와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관련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이것은 형평성을 맞춘 거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9쪽,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쪽에서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 학칙에 따라 현재 대학 2년 수료자나 전문대 졸업자 중 편입학을 통해 제3학년과 제4학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전시 장교 임용 대상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운영 과정과 장교 임용 대상 학년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과거 3사관학교 2학년은 현행 4학년과 동일하므로 법 개정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의견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졸업장에 먼저 졸업한 사람들 뭐라고 명시돼 있어요? 2년의 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까, 4년의 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까, 졸업장에 명시된 게?

○국방부차관 신범철 졸업장에 그렇게까지는 명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그런 명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문학사……

○한기호 위원 명시가 없고, 그냥?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학사 자격증으로만?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실제 생도들은 오래 전부터 1학년은 3학년하고 4학년 이렇게 해 왔던 것이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이상 2건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5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인의 기본권 교육 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8조(기본권 교육 등)에 관한 조문에 군인의 기본권 교육 대상에 군무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현재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조에서도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도 인권교육 대상으로 군무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장교’는 군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고,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는데 현행 제도에 맞도록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에도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현행 제40조(고충처리) 규정에서 장성급 지휘관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법안과 동일하게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수정의견 제36조(고충처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성급 지휘관에 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을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차관님,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 계룡대근무지원단장 2급 군무원, 이 2급 군무원은 데프콘Ⅱ가 되면 충가를 지급받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군무원은 못 받습니다.

○한기호 위원 못 받지요? 그러면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은 충을 받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못 받습니다.

○한기호 위원 군복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안 입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적이 침투하는 병력이나 또 포탄 낙하 상황이나 다양한 상황이 당연히 일어나지요.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지도를 가리키면서도 계룡대를 가리켰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전투부대 지휘관이 됩니다, 전시가 되면. 당연한데 이걸 군무원으로 해 놓고, 그러면 이 군무원은 누가 보호합니까? 본인 자위 수단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미군들은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해 놔줍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우리 근무지원단 거기에 갔을 때도 그 민간인들 지휘하는 거기의 지휘관이 미군 중령이 합니다,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리들을 전부 군무원으로 바꾸어 놓고,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고충 처리도 해라 뭐도 해라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지휘관이 아니에요. 군에서 지휘관이라고 하면 군인을 명하는 건데,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전시가 돼서 충도 없는 지휘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군복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민방 위복을 입고서 군인을 지휘한다고요?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그 밑에 경비연대장 대령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국방개혁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장성의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전투와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직위를 민간인으로 전환을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고 이 법안 자체는 기존의 이 체제를 갖다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성급 장교를 장성급 지휘관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군무원이 고충 상담도, 민간인이 지금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방부에도 제가 얘기하는 게 미군과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야 되냐? 미군은 예를 들어서 장군의 약 800명 정도가 현역 장군이고 한 800명 정도가 상근예비역 장군 아닙니까? 이 군무원들 거의 다 군인 출신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상근예비역으로 바꾸어 주라 이거야. 그러면 전시가 되면 상근예비역이 동원돼서 현역이 될 수 있다가니까요. 그렇게 열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태여 군무원이라고 민간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주방위군 사단장은 미국도 다 상근예비역입니다. 365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군복을 입은 예비역 장군들이 근무를 해요. 우리도 바꾸어 줘. 이 사람들 신분이 과거에 다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군무원이라고 왜 해 놓고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야, 예비역 장군으로 바꾸어 주면 되지. 그러면 그런 지휘의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긴다 이거야.

국방개혁한다고 장군 숫자 줄이는 게 국방개혁입니까? 누가 그걸 국방개혁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차관님 대답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결국은 민간인이 군인들 고충 처리 상담한다고 앉아서 중령·소령들 뭐 대위들 불러다 놓고 앉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제도개선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본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하십시오.

○**설훈 위원** 국방개혁에서 장성수가 많아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부인하겠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국방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성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을 예비역으로 바꾸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절차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법상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군무원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지금 다시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일응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무원을 예비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법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예비역 문제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나올 게 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더 자세히 하시고, 이 사항은 이 법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계룡대 본부대장이나 국방부 본부대장, 사실 그 본부는 주로 90% 이상이 현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현역 장성이 하는 게 맞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그런 직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병기창이라든가 뭐 후방 군수지원시설에는 군무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장병들, 병사들이 한 팔구십프로 있는 데의 지휘관들은 사실은 군무원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깐 그것은 이 법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기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근

예비역, 사실 2년 전에 제가 발의해서 이제는 예비군들도 6개월까지는 상근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됐는데 1년짜리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년짜리도 만들 시기가 됐다고 봐요. 한 스텝 갔기 때문에, 예비역 중에 지원하면 6개월까지 상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1년짜리도 만들어서 이런 대안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나중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법을 발의해서 예비군 제도의 근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국방부에서 제 의견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바꾸어 줘야만이 밑에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의 2개는 검토를 해 보시고, 국방개혁을 하면서 장군수를 줄이고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보직에 따라서 너무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재검토는 별도로 하시고, 지금 국방부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현재 제기된 법을 고쳐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어떻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지금 부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이 직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한다는 것을 차관님이 약속을 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미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해서 직접 대통령께 대면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10명 없앨 자리를 남겨 놔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방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과거에 개혁안이라고 만들어서 장군을 잘라 놓고 다시 살린다니까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 공무원이 그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은 뒤의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6항의 동일 제명의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성일중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4쪽, 주요 내용입니다.

공제회에 기존의 회원이었던 하사 이상의 군인·군무원 등을 일반회원으로 명명하고, 기존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현역병·퇴직자를 특별회원, 국방 관련 단체 등은 단체회원으로 신설하여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제기금 안정적 확충과 현역병·퇴직자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혜택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1조 ‘국방 관련 단체’는 ‘소속 단체’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하단 개정안 단체회원 자격, 안 제7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단체회원 자격으로 성일중 의원안은 사관학교 등 재단법인 그리고 대의원회 의결을 통한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 등 그 퇴직자가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김병주 의원안은 사관학교 등 재단법인과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또한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다음에 국방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을 단체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의견안은 다음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그러면 여기 현역병은

회원이 됐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걸 조금 복잡해서……

○소위원장 김병주 이쪽으로 와서 말씀하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회원에는 간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원으로 일반회원이 되었던 자나 병사가 포함이 되면 병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저희가 예금은 못하고요. 적립목돈수탁상품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콘도 사용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제휴시설들에 관한 복지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지혜택들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소위원장 김병주 국장님, 어제 저한테 보고했던 이 검토된 사항 복사해서 다 줄 수 있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준비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 주고 설명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국방부는 검토했으면 준비 과정에 각 소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검토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먼저 위원님들, 어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차이가 있다는 개념적인 설명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문처럼 저도 이게 의문이 나서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따졌습니다, 사전에.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국방부에서는 잘 따진 걸로 보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지금 현재는 일반회원으로 군인·군무원 등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역·군무원과 일부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국방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담보로 한 퇴직급여, 예금목돈수탁, 적립목돈수탁, 분할급여, 복지부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회원주택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군인공제회법에 맞게 현역군인이 우선 대상이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공제회 일반회원과 예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공제회 일반회원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나 소위원회에 의결권이 있고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주어 집니다.

이번에 신설해서 특별회원으로 만약에 규정하게 되면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경우에 현역·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지만 예금목돈수탁과 적립목돈수탁의 혜택을 누리시면서 회원콘도, 제휴시설, 예금목돈대여 등이 가능하십니다.

병사의 경우에는 다만 퇴직급여가 없기 때문에 적립목돈수탁상품만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회원콘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권이라든가 회원주택에 대한 특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체회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차별화해서 육사·해사·공사, 3사관학교, 국군간호학교,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등 각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과 무관하게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기타 국방 관련한 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한해서 군인공제회 단체회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기 때문에 예금목돈수탁만 가능하고 기타로 복지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 군인공제회도 동의를 한 거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군인공제회와 같이 협의해서 마련하였습니다.

○한기호 위원 군인공제회법 1조에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를 ‘군인 및 군무원’ 이렇게 한정 지은 데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군인공제회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지금 그래서 군인공제회법의 목적을 개정해서 목적이 단체회원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군 사관학교라든가 학교기관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만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서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단체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목돈수탁만 가능하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이 회원들이 병 생활은 1년 6개월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이 있어요, 출산했을 때 제공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그러면 그 혜택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복지부조에 해당하는데요. 병사의 경우에는 특별회원이기 때문에 복지부조의 대상은 안 됩니다.

○한기호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특별회원이나 일반회원이라는 구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회원으로 가입한 당사자인 병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이건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은행권보다는 조금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인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입 제한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회원인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지금 출산장려금을 얼마 주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세 자녀까지는 100만 원 줍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병사가 출산하면?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지금 병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 대상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콘도나 이것 이용하는 것도 과거에는 간부와 예비역 20년 이상 한 사람한테 준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병사들이 ‘우리한테는 왜 안 주느냐’, 지금 또 뭐 얘기해요? ‘골프장 우리는 왜 못 치게 하나’…… 안 그러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래서 저희가 세부법에 따라서 정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쿼터가 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혜택에 대한 진척된 상황을 보면 골프를 병사들이 치겠다고 한 적이, 꿈에도 우리는 옛날에는 생각 안 했어요, 골프장 만들 때. 그러나 지금 병사들이 요구하잖아요. 왜 우리는 군인인데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우리한테는 티(tee)를 할당해 주지 않느냐 이 얘기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듣잖아요. 그다음에 휴양시설 왜 우리는 이용하게 안 해 주느냐, 듣잖아요. 그러면 특별회

원, 병사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은 제외야 그러면 병사들이라는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도 똑같은 그건데 왜 우리는 제외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이것은 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할 것이고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굳이……

○한기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골프장을 병사들도 이용한다고 누가 생각 했어요? 골프장 만들 때 그 상품을, 치는 조건을 어떻게 했어요? 군의 간부하고 20년 이상 군생활 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국방부 공무원들이 다 들어왔지요? 국방부 공무원들이 골프장 만드는 데 뭐 기여 했어요? 공무원들 다 들어왔지요? 그 뒤로 또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대법관들도 와서 치지요? 인심 써서 풀어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병사들도 해 줘야지요?

예상되는 걸 얘기하는데 상품 약관을 그렇게 맺으면 된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예상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상되는 상황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지금 군의 복지시설, 우리 간부들이 운용하던 시설에 대해서 병사들 다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건 저희가 규정을 만들고 또 국회에 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설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복지를 늘려 나가는 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병과 장교와 장군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군대가 아니지요. 일반국민과 똑같은 조직이 되는 거지요. 군대는 특수조직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국민하고는 전혀 다른 조직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이 있는 겁니다. 장군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고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걸 똑같이 하자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병이 요구

한다 하더라도, 장군이 하고 있는 그 위치에 나도 똑같이 해 달라,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논리 전개를 정확히 해야지요. 복지를 늘리는 건 좋습니다마는 한도가 있고 상황이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바꾸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병들의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한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뭘 손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약관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약관으로 해서 실제로 병사들이 특별회원이 됐을 때 특별회원이 갖는 지위에 대해서 그냥 약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군인공제회에 우선 설립, 군인공제회법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법 말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군인공제회 정관이라도 수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 하지 않고 상품으로만 팔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관을 수정해서 우리 병사들, 특별회원들한테는 여기까지 한다 하는 게 분명하게 되어야지 그게 안 되고 그냥 막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누가 우리 군인들에게 복지혜택을 확장하는 걸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정밀하게 좀 검토해서 법에 돼 있는 취지, 정신을 같이 살려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법을 보면서, 약관만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관에도 분명하게 바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관 바꿨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이번에 일반회원 외에 특별회원이나 단체회원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정관 다 만들게 되고요. 정관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하신 것 중에 회원콘도는 저희가 우리 군인복지기금으로 만들어서 조성해 놓은 콘도가 아니고 군인공제회 자본으로 만들어진 콘도는 별도 있습니다. 그 회원콘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관 개정안을 준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군인공제회 돈으로 운영되는 콘도나 휴양시설 같은 경우 특별회원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지요, 병사들한테도 회원이 됐으니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냥 너도나도 다 해주겠다,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해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도 그렇게 한다고 표가 나오고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것은 해 줘야 될 범위를 분명히 해서 내가 받을 게 어디까지다 하는 걸 알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혹시 군인공제회 책임자 왔습니까?

○군인공제회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예, 군인공제회 기조실장 김용우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군인공제회에서는 지금 정부 측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나요?

○군인공제회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예, 방금 보고드린 보건복지관하고 한 네 차례에 걸쳐서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했을 때 문제없습니까?

○군인공제회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예,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된 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밑에 하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군인공제회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오해하지 않게, 또 저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뭔가 하나를 주면 2개 달라 하고 3개 달라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그어

야 원래 군인공제회가 만든 취지가 손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복지가 확대돼 가는 거잖아요?

○군인공제회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명확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예, 입법취지에 맞게 정관하고 관련 법령 개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차관님, 이렇게 충분히 검토한 것은 사전에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게 하고 아니면 자료라도 제출해서 자체 검토를 하시게 좀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왜냐하면 여기 소위에서 검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심층 깊은 검토가 안 되니까 사전에 배부를 해서 보좌진들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31쪽입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2쪽, 주요 내용입니다.

군에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교육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군대 내의 성인지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군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실

시해야 하는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교육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법, 성매매 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포괄하므로 이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38조제2항에 대해서 이들을 법률안에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성일종 위원 사고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성과 관련된 사고요?

○성일종 위원 예.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일종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소위 심사자료 37쪽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 놔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 숫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22년이 801건이고 21년이 1119건 이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그게 총괄이고요, 오른 쪽에는 계급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계급별로는 좀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37쪽, 38쪽에 자료가 적 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병장, 상병, 일병이 제일 많고요. 원사, 상사 그다음에 대위……

○성일종 위원 이 법안이 굉장히 좋은 법안인데 지금 법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집중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병사세계에서는 병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부사관은 하사, 원사, 상사 이쪽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 같은 건 좀 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그래서 상담관도 있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일종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법안인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 교육을 아주 잘 체계화를 해 가지고, 지금 매년 범죄는 증가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사실은 21년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돼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러니까 20년에 886, 21년에 1119 했다가 작년에 800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자료의 세 번째 칼럼 계가…… 아, 22년 6월까지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 좀 이쪽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세부적으로 교육계획이나 이런 걸 좀 짜서 집중적으로 나는 그 계층에, 지금 고급장교 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성일종 위원 병사 쪽하고 하사관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이 법에 따라서 세부계획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것 있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것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배인영 군인권총괄과장 배인영 서기관입니다.

저희 국장 대신 대참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계급별·신분별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교육도 그렇게 계급별·신분별로 나누어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매년 그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마 설훈 위원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법안을 착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신 건데, 그러면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 정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스케줄링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여기에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법안 좋습니다’ 하고 동의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몇 항 몇 조를 어떻게 어떻게, 시행령 어디를 더 강화하고 해서 우리가 이 범죄를 좀 더 범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선명하게 갖고 나와 주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의일 것이다,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한 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설훈 위원님한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설훈 위원 이 법안은 왜 나왔느냐 하면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성인지교육을 받아 보고서야 성인지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성인지교육을 받았을 경우하고 안 받았을 경우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병들도 물론 장군도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특히 군부대에서는 이걸 법상으로는 받도록 돼 있지만 이게 그냥 호지부지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연 1회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이걸 강제로 집어넣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의 경우는 본 위원이 실제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 이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몸으로 체득한 부분이라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성일종 위원도 이게 좋은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법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하나만 좀 더……

과장님이지요?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배인영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성인지교육을 지금 병사들은 그렇다고치고 간부들은 몇 퍼센트가 지금 다 수료를 했어요?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배인영 저희 의무교육으로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무조건 연 1회?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배인영 연 2회 받도록,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원격교육으로 하고 한 번은 무조건 전문강사에 의한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의무적으로 연 2회를 하도록 돼 있다가?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배인영 예, 의무적으로 하고 받지 않으면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계속 늘어나요? 왜 계속 이렇게 범죄율이 늘어나요? 그 원인 분석은 해 보셨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성비위인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신고량이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 세부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잘 세워서 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짜 보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말씀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 법안에는 찬성합니다. 국방부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인들은 군형법에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성범죄와 관련된 군형법의 양형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군형법에 성범죄자는 징역형으로 돼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무관리관님, 그렇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군형법상에 적용된 성폭력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이예람 중사와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군인들이 수사하고 지휘관들이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심정적으로 이것을 법대로 처리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징역형이 되니까.

그러면 국방부가 지금 맨날 국방부 공무원들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들인데 항상 얘기하는 게 민·군의 형평성을 얘기했잖아요. 민간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인도 전부 징역형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왜 그건 형평성을 맞추지 않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법사위에서 논의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상정에 대한 요청을 드리

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미온적이라는 게 이 처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심정적인 게 군사경찰, 법무장교 그리고 관련된 지휘관, 참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처벌하게 되면 징역형이거든. 잘해야 집행유예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징역형이에요. 그런데 왜 국방부는 가만히 놔두느냐 이거예요.

이 교육한다고 교육 성과가 나와요, 제도적인 이런 맹점이 있는데? 죄를 지은 것에 상응한 만큼의 양형이 돼야 거기에 대한 것이 합당한 거지, 군인을 군복 입었다고 해서 다 징역형을 해야 된다, 성범죄는? 그게 맞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옳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뒤에 있는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제가 국방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군의 간부들이 많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 하고, 내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그러나 징역형이 되면 예를 들어 20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상사나 원사 또 소령, 중령, 영관장교, 장군 이런 군에 20년 이상 군 생활한 사람들이 징역형이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법무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벌에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한기호 위원 징역형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금을 못 받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한기호 위원 해 봐야 자기가 낸 기여금밖에 못 받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기여금 받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자꾸 미온적인 처리 아니면 은폐하려고 그랬다, 이런 의도성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왜 양형을 좀 민간과 같이 균형을 못 맞추니까, 법무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위원님,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균형법이 개정돼서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 생긴 사건은 민간에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군에서의 은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한기호 위원 아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거론된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10년 이상 얘기된 거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한기호 위원 국방부가 왜 이걸 미온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안 가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미온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할 때마다 균형법상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금형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정부입법을 내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징역형이 된다니까요.

○설훈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한기호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들었는데 한기호 위원이 정확히 아셨으니까 빨리 법안 발의하셔 가지고 균형법 개정안을 내셨어야지요. 지금이라도 내십시오.

○한기호 위원 법안을 냈습니다.

○설훈 위원 제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법안을 내서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미 낸 지 벌써……

○설훈 위원 그러면 법사위 가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국방부에서 법안 토의하고 할 때도 미온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훈 위원 국방부 탓할 문제가 아니지요. 법안소위에서……

○소위원장 김병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 성범죄를 줄여야 된다는, 전원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데 저도 의견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일단 저도 동의하고요. 군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지금 한기호 위원님 얘기한 그런 미비점도 있고 환경적으로 군이 사실 밀집되게 한 공간에 많이 있잖아요, 생활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군에서는 좀 잘 검토를 하시고.

특히 법에 대한 것은 사실 군은 모든 것이 이중 처벌되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늘 그것이 부당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없도록 계속,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입법을 하지만 그 문제점은 정부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정부입법으로라도 내서 빨리 되고 또 법사위에 가 있으면 차관님하고 장관님이 그런 것들은 좋은 법안이라면, 법무부가 또 법무부장관이나 이런 데서도 반대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병영 보호법이 올라가서 공정한 병영을 위해서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41쪽,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2쪽, 주요 내용입니다.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탁 취소의 요건과 청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위탁의 취소 요건과 취소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입법례가 있고 법률의 명확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방부는 하위법령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성일종 위원 차관님,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런 선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현재 전군 물량 대비 수량은 31% 수준이라고 하는 보고는 받았는데……

○성일종 위원 31%가 뭐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수탁을 한 게 31%이고요.

시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 사례는 1건도 없고 현재 18년부터 저희가 수탁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취소 사례는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수탁이라고 하면 군 숙소 같은 경우 민간인한테 주어서 관리 이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소유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관리라고 하면 시설 전체를 이야기하는가요, 청소 업무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하나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우리 아파트 관리하듯이 관리해서 관리비를 청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 아주 간단한 수선도 하고.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이것은 그냥……

○성일종 위원 아파트 관리하는 법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인가 있거든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그것은 따르는데 이 관리……

○성일종 위원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입찰하고?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예, 맞습니다. 이 위탁받은 자가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충돌이 안 돼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그런데 이게 국가 소유 아파트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자에게 수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1년에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취소하는 규정이 없어서 다시 법률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군 아파트는 군에서 다 관리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국가 것이고. 그런데 군에서 사단이나 군단이나 또는 대대급에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수탁하자는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수탁을 일부는 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돼서 21년에 마련해 뒀습니다. 그때 제가 좀 반대를 해서 한 1년 지체가 됐지요. 왜냐하면 수탁하면 격오지 부대들은 잘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험해 봤을 때 문제없다 해서 해 뒀는데, 그때 법안 할 때 수탁도 주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못 했을 때는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마련해 놔서 지금 그걸 마련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그때 21년에 이 법이 되고 수탁이 시작됐는데 아마 수탁 기업 중에 못하는 부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뭐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자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법으로, 누가 올렸지요? 윤후덕 의원님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맞습니다, 위원장님.

○**성일종 위원** 이것을 줄 때 지금 세대 수는 얼마 정도 잡았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위원님, 제일 뒤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 후에.

○**송옥주 위원** 45페이지에 있어요.

○**성일종 위원** 설명 한번 하시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주택관리공단, 공우이앤씨 등이 현재 예를 들면 1군단에서 발주를 했고 거기에 낙찰된 업체가 주택관리공단이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군단 예하에 있는 관사와 간부 숙소를 이 주택관리공단이 다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주택관리공단은 지금 국가기관이에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주택관리공단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수익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아다가 또다시 민간한테 하청을 주나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아닌 걸로 알고요. 주택관리공단이 직접……

○**성일종 위원** 직접 직영으로 하고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뭐예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공우이앤씨는, 결국은 여기 있는 기업들은 주택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공우이앤씨는 군인공제회 산하의 자회사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이 민간은 빠져 버리고 국가 공공기관만 해요, 아니면 민간인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아닙니다.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47쪽,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음 쪽, 주요 내용으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동 내용은 현역병 등이 원하는 경우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서로 다른 제도인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제도와 위탁진료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제도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한 동 제도의 지원대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군간부후보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현재 군인사법 제2조로 돼 있는 인용 조문을 병역법 제2조로 수정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군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하여 개정안은 2021년 8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고, 적용례에 관하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동의합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도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차관님, 1차 진료기관이 있고 2차 진료기관이 있고 대형 종합병원, 큰 대학병원이 3차 진료기관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낸다고 할 때 의료보험 수가의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1차 진료기관부터 민간으로 보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차부터 보내겠다는 건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저희가 특히 병사 경우에는 위탁진료제도가 있고 진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기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법안은 진료비 지원제도라고 해서 군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저희가 진료비의 급여 항목 중에서 개인이 내야 되는 항목의 94%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은 어느 의료기관에 가든지 진료선택권을 저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갔을 때……

○성일종 위원 바로 그 부분이 지점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지점이 그 지점인데, 군에서 진료하는 진료비하고 민간으로 나갔을 때의 진료비가 차등이 많이 나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 군병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처럼 1차 의료기관에는 사단 의료기관이 있고 2차의 군병원이 전후방에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병원으로 수도병원이 있는데 저희 군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병이든 간부든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바로 그 지점인데 2차 진료기관이나 3차 진료기관 가 가지고, 대학병원이나 좋은 병원에서 받게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부모한테도 본인한테도 심적 측면에서 또 의료수준도 좀 나은 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진료기관은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막 내보내게 되면 보험제정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군에서 1차 진료 정도 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면 2차 진료기관으로 가라’ 해서 예를 들면 민간의 도립병원으로 가든지 큰 병원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민간으로 하게 돼 버리면 군의 의료체계에 대한 붕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갔을 때 국가의 의료재정으로 부터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부담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의 94%를 국방예산으로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나가서 하고 그 청구되는 것만큼

국방예산으로 준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나는 이 재정도 굉장히 부담될 거라고 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많이 됩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2차나 3차 진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동의하는 건 좋은데 긴급상황이 아니면 1차 진료 정도는, 군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재정도 생각을 해야지. 모든 군인들이 다 1차부터 바깥에 나가서 진료받고 싶지요.

그런데 군의관도 있는데 별스럽지도 않은 병가지고 다 민간병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94%를 국방부 예산으로 대납을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위원님, 저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진료라든가 뇌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군병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에는 위탁진료제도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 진료비 지원제도는 사실 어떤 상병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의 진료 선택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와 권익위의 권고 때문에 저희가 21년 8월부터 도입을 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방예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심의 절차라든가 어떤 상병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좀 제한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인권위에서 진료선택권을 제약하지 말라는 권고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1차 의료기관은 가지 않습니다. 보통 2차 의료기관을 많이 가고 있고요.

나가는 이유가 저희 군병원이 15개 있지만 부대 위치나 이런 것들로 진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군의관을 비롯해서 군의 의료체계는 항시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시를 대비해서. 그렇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성일종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데요. 군의관이 있는데 다 외부 진료를 하게 해 준다고 하면 다 나가 버릴 거라 이거지, 상당수가.

지금 인권위의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위도 의료보험체계나 이런 걸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자기 의견 냈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이 받아드릴 수만은 없다, 그러니 절충하든지 해서 군에 일정한 의료 수준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 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 이 부분만큼은 그 지점을 한번 우리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취지가 맞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동의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이 제도가 국방 환자관리훈령에 의해서 21년 8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 주신 이유는 이게 훈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수준으로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돼도 기존의 훈령을 통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성일종 위원 그러면 훈령을 조정해야지요, 군의 필수적인 의료 기능도 유지를 해야 되고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응급사태라든지 암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내보내는 게 저는 100%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디 부러졌든지 깎스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보내면서 국가재정을…… 군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성일종 위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군이 보수적으로 가야지 지금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상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지금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제도 하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병들이 다 진료비 지원을 통해서 민간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군병원의 실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군병원도 진료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 대기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지휘관의 승인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단순한 치료에 대해서도 민간병원을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시행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좀 더 제도개선을 하고 또 이게 의료적인 것들이 좀 있고요, 의료법적인 내용으로 특히 급성기로 발전할 수 있는 연령대의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질환을 다 나열해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규제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잘 이해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혹시 통계를 갖고 계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성일종 위원 1년 반 됐다고 그랬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먼저 6개월이 있었을 것이고 시작을 하면서 연말 결산한 게 있을 것이고 또 있을 텐데 1년에 한 얼마 정도 나갔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통계 자료는 있는데, 건수는 제가 아직 외우지 못했는데……

○성일종 위원 국방부가 지원한 돈은?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1년에 300~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제가 법안소위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의할 내용들이 한 40건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법안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보전체계는 전반적으로 진짜 오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따져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그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 법안은, 이미 1년 반 동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대로이고 법안에 근거를 일단 마련해 줘야 훨씬 더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쉽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법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여기에 언급한 민간 진료를 원한

다고 한, 단서 조항이 없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 현역 등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최근에 원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에 갔을 때는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갔을 때는 쓸 수 있는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군병원에 왔을 때는 본인 부담도 없고 간병에 대한 부담도 없고 진료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오히려 지금 수도병원에서 수술 같은 경우는 더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병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군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제일 최고의 희망사항이에요, 군복무하는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휴가를 가길 그렇게 많이 원하고 또 전역하는 날짜를 쏘고 하는 건데, 병원 진료도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간다는 데 대한 그걸 더 중시한다는 거지. 그러면 원하는 경우, 원하면 다 내보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한사항으로 토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에서 진료가 어렵다든가 제한된다든가 이러한 경우라고 안 달아 놓으면, 다 원하지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방부가 너무 안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실상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경우라고 하면 다 원한다면,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문제도 진료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외부 치료비 때문에. 군에서 진료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라고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그걸 선을 그어 놓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원해도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한기호 위원 법에 넣어 놔야 된단니까요, 법에. 법에 넣어 놓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아들도 밖에 나가서 치료받고 싶다’,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접 받는 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수없이 받잖아요. 왜? 의

사를 못 믿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군의관 못 믿는다, 군의관 실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분들도 다 전문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맞다. 그러나 여기에 단서 조항이 없이 ‘나중에 시행령에 넣으면 됩니다’ ‘지휘관의 허락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법에다가 그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저는 단서 조항이 안 들어가면 이 법 찬성 안 해요.

○소위원장 김병주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지금 시행령으로도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그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안 돼서 시행이 어렵다면, 제가 오늘 또 논의를 해서 하는데 시행령에 있고 현재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오늘 한 40건이 있고 이러다 보면, 지금 지난번에도 법안 소위가 파행돼서 시급한 법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일종 위원 아니, 회의를 한두 번 좀 더 열더라도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훨씬 더 많이 열려고 합니다.

○성일종 위원 심도 있게 가야지 그냥 속도를 내기 위해서 40건이라고 해서 막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것을 지금 토의에서 넣느냐 마느냐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재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숙고의 시간이, 숙성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급속히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지요.

○설훈 위원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차제에 우리 군 의료시설의 의료 능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닥터들에 대해서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민간병원으로 가겠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군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군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민간의료기관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다, 그 신뢰가 올 수 있어야 이게 바로잡힌 군 의료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월터리드 육군병원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왜 그렇게 못 잡니까? 충분히 갈 수 있지요.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놓고 생각하시고 병들이 군 의료기관을 피하는 이 현상을 빨리 개선시켜야 한다고 봐요. 구체적인 국방장관의 사업 중의 하나로 넣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성일종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준 게 300억에서 400억이라고 그랬지요? 다음에 회의하실 때 그 진료 항목을 분석한 자료 좀 한번 내봐 주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성일종 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으로 가는 것 100%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가도 되는 것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군의 1차 진료기관인 군의관도 기본적으로 다 소양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진료의 폭을 갖고 있는데 그냥 터무니없이 무조건 다 민간으로 나가는 것은 군의 의료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삼사백억씩 나간다고 그랬으니 1차 진료기관에 안 나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가 되는지를 통계를 한번 내봐 가지고 그 판단 기준을 보고 이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봐주세요.

감기 같은 것도 막 나갔나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성일종 위원님 말씀, 한기호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5년마다 개정을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진짜 군 의료 능력인 것 같습니다.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장비라든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관 의료인력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관 2500명 중에서 거의 88% 이상이 단기 군의관, 의무복무로 와 있는 군의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은 사단급인데 거기도 의사 수가 8명에서 10명 정도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원하는 모든 진료과를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능력이라든가 접근성 측면에서는 병이나 병의 가족들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간병원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군 의료 발전계획과 말씀하신 진료에 대한 민간병원 사용 실적·현황 통계를 다시 보고드리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의무사령부나 저희 군 의료인력 또 민간외 보건의복지부와 상의를 좀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9항까지 8건의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법안심사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요약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의사일정 12항부터 19항까지 8건의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공표를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려는 것으로 관련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경우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정계획이 5년 주기인 것과 법 체계상 균형을 고려하여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국방부는 동의한다는 입장인데 최근 법무부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사안까지 공표될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방부 의견 청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방위산업법과 관련해서 약간의 법무부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 차장께서 부연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설훈 위원 이 법안을 본 위원이 제출한 부분은……

○송옥주 위원 여기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훈 위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내 말씀 듣고.

이 부분은 국방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방계획이 방위산업이라든지 또는 국방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우리 군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모든 게 투명해졌구나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군사기밀에 관한 부분은 일체 다 빼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가, 방위산업 부분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을 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염려한 것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이 공개돼서 입법취지와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건데 사실 같은 법, 지금 개정하려는 법-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5조를 보면 저희가 방위산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제도 그리고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법무부에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정확하게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법무부의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이 법안 발의는 22년 8월입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닿고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사청의 입장을 국방부를 통해서 공문은 제출한 상태고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심의 이후에도 법무부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일종 위원 아니,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거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산 기술보호법에서 우리가 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법무부가 염려하는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위주로만 저희가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성일종 위원 그 부분이 기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적에 넘어갔을 때 그런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보안……

○성일종 위원 아니, 기술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설훈 위원 그것은 안 나온다니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 내용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안 나오는데 추론에 대해서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큰 계획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 방산기업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내부 보안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인터넷에 공개를 쪽 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태까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훈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잖아요, 실제 각각의 기본계획을 만들 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위산업발전법 제5조에 있는 기본계획 내용은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저희가 계획에 담아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여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12, 13, 14항 방위산업법이 쪽 있는데 이 문건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냐, 이 문건을?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는 계속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한기호 위원 만들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권이라도 가져왔으면 좀 봅시다. 아니, 지금 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건지 보여 달라 이거야, 여기 문건 중의 하나라도. 지금 방사청 차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방사청 차장님이 ‘이 책입니다.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 줘야지 말이 되지 그냥 빈손으로 떨렁떨렁 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국회의원실이라든지……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 기본계획이든지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전번 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번 것을 내놔 보라 이거예요. 현품을 보자 이거예요. 다 있는 문건을 공개하든가 상임위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건을 보자 이 얘기지요, 어떤 건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미 배포는 해 드렸고 인터넷에 지금 공개돼 있는데 지금 원하시면 오후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문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물건을 보여 주면 간단해요. ‘이것 별것 아니구나’, 간단하다 이거지. 국방부 것도 마찬가지로 예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인터넷에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본 문건 하나 출력을 하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없으면 과천에서 하나 갖고 와서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 주고 이것은 보시고 판단하고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것은 정회하고 다시 논의해도 되는 것이지요?

○한기호 위원 기밀에 관한 사항, 비밀에 관한 사항에 저촉이 안 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나 방사청이 ‘이게 기존에 있는 문건인데 이겁니다’ 하고 보여 줘야지 ‘아,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이게 오겠구나’…… 최소한도 오늘 소위원회 올 때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한기호 위원님 문제 제기나 성일중 위원님 문제 제기는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면 금방 이것이 어떤 건지 아니까 오후에 보고 이것을 의결을 할지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13시 4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오전에 심사를 마쳤으나 국방 관련 기본계획 서류를 보시고 양해된다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본계획들 한번 보셨습니까? 한기호 위원님?

제가 봤을 때 크게 보안상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 유출 이런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관계된 거니까.

○한기호 위원 이것을 지금 문서로 만들어서 배포하나요 아니면 그냥 띄워 놓고 볼 수 있도록만 하냐요, 현재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현재는 방산기술 보호 같은 종합계획은 인터넷에만 공개를 하고 있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배포하는 기준은 누구까지지요? 방산기업 등록된 데는 다 주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9항, 16항 이상 3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인급식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소위 심사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에 준하여 군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영양 관리 및 경비 지원 등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정안은 장병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로서 학교급식법이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한 다른 조합이나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0쪽에서 제정안의 조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급식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과

조문 체계를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의 조문 구성은 현재 본칙은 4장 18조, 부칙은 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각 장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급식기본법안 제명과 총칙 5개 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군인급식기본법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군급식의 대상에 군인 외에 군무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군급식기본법안’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조(목적) 조항에서는 군급식의 질 향상과 군인의 건강 기여라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군급식의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하였고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문구를 제정 취지에 목적으로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조(정의) 조항입니다.

제2조제1호에서는 군급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용 조문을 군급식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2조제2호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으로 제정안에 따른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자는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행의 주체이자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이 부과되는 주체입니다.

반면에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의무 이행 주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부과 대상에 제외되고 있어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자, 즉 식자재 조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안 10조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는 용어를 ‘군급식 공급업자’로 변경하면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국가의 임무) 조항은 양질의 군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일부 자구를, 즉 ‘안전하게’를 ‘안전적으로’, ‘계획’을 ‘방침’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군급식 대상)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군급식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5조는 군급식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군급식에 관한 계획이나 군급식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방부에서는 전군급식정책심의회와 제대별 급식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명과 제1장 총칙 5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료 41쪽부터 47쪽 사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그다음 것 수석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그러면 계속해서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운영 6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제6조(군급식시설·설비) 조항입니다.

각 군부대로 하여금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식재료) 조항입니다.

제7조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원칙을 규정하고 그 품질관리기준 등은 국방부령으로 위임하고 각 군부대 등으로 하여금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경지역 내 농산물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7조제3항 관련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만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유사·동일한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한 다른 조합이나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유사·동일한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한 조합이나 단체는 누구나 위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위탁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을 위탁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7조제4항입니다. 동일 내용 규정이 이미 입법화되어 있어 이 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영양관리) 규정입니다. 이는 군급식의 영양관리 원칙을 천명하면서 그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위생·안전관리) 규정입니다. 군급식 시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입니다.

제10조에서는 각 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리·운영토록 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를 위한 선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전시 군납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제정안에서 정하기보다는 전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전시 행정 수행을 위한 정부의 비상대비계획, 예컨대 총무계획과 같은 정부계획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시 군납사업소 지정은

충무계획 등 전시문서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제11조입니다.

제11조는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으로 군급식관계군인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용 조문을 좀 정비를 하고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즉 ‘적은’과 ‘기제한’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 이를 ‘기제한’으로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운영 6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료 47쪽부터 5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수정 부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국방부 수정의견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반영해서 지금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국방부 수정의견이 반영된다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수정의견은 저것 아니에요? 48쪽의 농업·축산업·수산업협동조합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우측의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이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러니까 49쪽 중간 부분 비고 우측의 국방부 수정의견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동의하셨고 그 뒤의 51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다 조율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옥주 위원 군부대에 조달하는 식재료를 구입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각급 군부대가 되는 건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농·수·축협에서 통합 계약이 되고 나면 사단급 부대에서 급식 메뉴를 편성해서 식당에서 먹을 만큼 청구를 하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주체와 시행하는 주체는 좀 다릅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합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계약을 70%는 중앙을 통해서 하고 30%는 사단급, 비행단급, 함대사에 현금을 줘서 거기서 정부구매카드나 발주를 통해서 취식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농협이든 축협이든 수협이든 그런 데서는 지역에 있는 생산품들의 일부를 구입해서 군인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그런 현실은 있는 거네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농·수·축협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부대에 식자재를 공급할 때는 해당 지역의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송옥주 위원 그것 해 놓은 게 시행령이나 어디 다른 규칙에 있나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국방부 급식방침에 해서 매년 회의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급식방침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거기에 대해서 농·수·축협이 별도로 국방부로부터 그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농민이나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54쪽, 제3장 보칙 4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제12조는 군급식 운영평가 조항입니다.

동 조항은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제13조(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동 조항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조사, 즉 출입·검사·열람·수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증표 제시 의무 및 시정명령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군급식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군내 특수성, 즉 보안구역·격오지 등을 고려해서 검사·수거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수행할 수 있는 군내 조직과 의료진을 활용하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제14조입니다. 권한의 위임 규정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는 국방부장관이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4장 벌칙 조항입니다.

제16조(벌칙)에서 안 제11조에서는 군급식위탁 공급업자 등이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11조제1항제3호, 이 내용은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벌칙이 축산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축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에서 제시한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고 인용 조문 등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제17조(양벌규정)은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과태료) 조항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 또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62쪽 부칙 조항입니다.

제1조(시행일)는 지금 제정안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으로 제정안은 제4조 등 다수의 조항에서 행정입법에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2조에서는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토의견으로 군급식에 관한 업무 위탁 시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조문이 앞의 제10조제1항에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경과조치도 동일하게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및 부칙 조항에 대해 설명드렸고 자료 54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얘기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발의를 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한기호 위원 이 법 발의하고 나서 수석전문위원실하고 또 국방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수정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수정한 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인급식기본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2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군 공용 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국방부는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군 비행장을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술항공작전기지 외 다른 항공작전기지는 비행장 부지 및 활주로 규모, 항행안전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므로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차관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6쪽입니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행정기본법이 규율하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존재함에 따라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고 행정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률들이 제안되었으며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8쪽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으로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사안입니다.

13쪽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사안입니다.

다만 14쪽을 보시면 개정안에서 현행법 제21조 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4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조항이 삭제된 자리에 신설 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다음과

같은 조문 배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6쪽입니다.

4.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취지입니다.

18쪽입니다.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취지입니다.

22쪽, 부칙입니다.

부칙의 경우에도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서 지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제재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국방부 및 병무청 의견으로는 관련법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동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합헌 판결을 받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 근무시간 중 정치행위 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현재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및 병무청 의견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부터 4항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위 외에 다른 요원의 정치행위 요구, 다른 요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보상·보복까지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정치행위 제재에 관련해서는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병무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군인복무기본법으로 공무원 및 군인의 정치행위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 수정의견, 즉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정부 수정의견으로 신속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근무시간 중 정치적 행위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내외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근무시간 중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정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지금까지 대체복무가 정치행위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아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있지 않나요, 사례가?

○한기호 위원 이게 있었을 텐데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최구기입니다.

대체역은 현재까지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가 판결되기 이전인 21년 11월까지 21년도에 7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 사회복무요원은 있었고?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소위원장 김병주 대체역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없었고?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돼서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금지돼 있나요, 지금 법적으로?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오늘 이번 법안에 같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 대체역 따로 그것 따로?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게 사실 법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역이나 사회복무요원도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항목이 없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그런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보완하는 겁니다.

의견 없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14쪽입니다.

앞의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제재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그리고 17쪽, 2. 근무시간 중 정치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은 앞의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체계상 통일성을 위해서 예술·체육요원에 관한 내용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 법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연관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 출마자의 직계손인 경우 대체복무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주나요, 안 주나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 부분도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차장님은 아시는 게 뭐야?

○병무청차장 김종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입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가족 중 출마자가 나왔을 경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훈령으로 개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디에 명문화시켜 냈어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저희 내부 규정으로……

○한기호 위원 작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했는데 병무청에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애가 휴가를 못 나가고 있어서 제가 직접 병무청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휴가를 나중에 조치해 줬는데……

지금 왜 내가 조항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느냐 하면 어디에도 없다 이거야. 없으니까 강원지방병무청장이 ‘안 된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무슨 선거운동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휴가를 안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나한테 항의를 하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병무청장님한테 전화까지 드리고 이랬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들의 정치행위 이것 외에 분명하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되어

있어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내부 규정으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설훈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군인이면 군기관에서는 군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법을 다 따라야지요. 그러면 군인이면 정치 관여하면 안 되지요. 자식이라 그래서 휴가를 주면 정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정치하라는 건데 그것 법 위반이에요. 휴가를 준다는 것은 선거운동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간단한 것을 이해를 못 해요? 군인 신분에는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휴가를 주라고 그랬어? 휴가 준다는 것은 정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한기호 위원 공무원들은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서 공무원……

○설훈 위원 공무원이 가능하다는 법이…… 그 규정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한기호 위원 가능합니다. 직계인 경우는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선거법에. 그런데 병무청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교사인 경우 그다음에 공무원인 경우 자기 직계가 출마했을 때는 그 휴가를 득하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설훈 위원 선거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이게 어디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임의로 못 나가게 해서 형평성 문제로 문제가 된 겁니다.

○설훈 위원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개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설훈 위원 아니, 연가 범위는 아니고 공무원일 경우에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어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규정을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위원님, 선거관리법에 직계가족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준용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되어 있습니다.

○설훈 위원 되어 있다면 군인도 해 줘야 되겠네.

나는 그것 돼 있다고 생각 못 했는데 돼 있다면 그것은 군인도 해 줘야 돼요. 그건 한기호 위원 말이 맞아. 공무원이 된다면 군인이라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상하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그러면 현역도 된다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예, 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군복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신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떠나서 사복을 입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구체성이 법에는 되어 있어요. 선거운동을 직계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 정량의 휴가 범위 안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군인들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고 병무청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거지요.

○설훈 위원 병무청이 몰랐구면.

○소위원장 김병주 국방부차관님, 저도 이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사실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구체화된 어떤 예규나 그런 지침이 있어야겠네요, 자체. 왜냐하면 현역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선거기간 내에 하면 휴가를 본인 휴가를 얻어서 하되 사복을 입고 한다든가, 군복을 입고 나가는 경우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지침이 구체화가 안 돼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이것하고는 별개로 확인해 보시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체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군에 근무하는 현역, 대체역, 사회복무요원, 하여튼 군을 대체하는 모든 그런 기관에 관계된 것은 훈령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다음 국방위 전체회의나 아니면 법안소위를 할 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시행령까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것과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국방위나 소위나 어디든 위원장님 지침을 받고.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선거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

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가 없고 선거관리에 대한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하위로 국방부 훈령이나 병무청에서 어디에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안 넣어 놓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지.

○소위원장 김병주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24, 25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8쪽입니다.

예비역 병에서 예비역 하사로의 임용 근거 신설하는 사항인데, 동의합니다.

국방부·병무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게 과거에 특례로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군 설치를 처음에 했을 때 그 당시에 간부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군 중대에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어야 되는데 소대장이 간부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병장이나 이 출신들을 부사관으로 임명하고 이것 했었는데, 그 내부의 훈령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지금도 발생할 수가 있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도 전시 하사의 경우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사 계급에 예비역 병장을 지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전시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시에.

○한기호 위원 평시는 아니냐?

○국방부차관 신범철 평시는 아니지요. 전시에

이렇게……

○한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전시라고 명시했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지난번 법을 검토해 보니까 전시라고 명시해 놓지는 않은 것 같던데.

○국방부차관 신범철 가능하게 해 놓고 전시 때 지명을 하도록 하는 것……

○소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전시가 돼 있나요?

○전문위원 천우정 그런 건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시라고 해 놓지 않고……

○한기호 위원 국방 전시의 명시는 없어요, 여기 지금 법안에.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평시도 할 수 있다는 거네, 법안대로면?

○국방부동원기획관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동원 예비역들에 대해서 동원 지정을 평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시에는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전시에는 동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동원 지정을 할 때 지금 하사 계급에 지정할 하사들이 부족해서 예비역 병장들을 하사 자리에다가 동원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역들 같은 경우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역으로, 병으로 제대한 사람이 일정 교육을 받고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시에 소집될, 동원될 사람들을 지정할 때 그 사람들을 그 하사 자리에다가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시·평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시에 그 사람들을 동원 지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자리를 평시에 지정해 놓고 훈련하다가 전시에 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방부동원기획관 염주성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9항까지 이상 3건의 병

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2쪽입니다.

1,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또는 유통자 처벌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수정의견으로는 한기호 의원안 중심으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위 명확화, 위임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방부도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2, 병역면탈 교사 및 방조자 처벌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교사범은 물론 중범인 방조범까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방조행위까지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한기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 의견으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순 방조행위까지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대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는 쪽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명확한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고요. 또 정보 게시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보 게시가 금지되는 공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양형기준과 관련해서는 자살예방법 및 마약류 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하는 쪽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방조범 얘기인데요. 단순 방조행위까지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형법상의 일반 논리와 연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방조범 부분은 저희가 형법 일반론적으로 정범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인터넷에다가 A라는 사람이 올렸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법을 올렸어. 그러면 그걸 누가 찾아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누가 찾아내냐고요?

○한기호 위원 아니, 조장하거나 이것 하는 사람이 생긴 것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군대 안 가는 방법 이것 지금 인터넷에 뜨잖아요. 떠 가지고 거기에 보면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찾아내느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걸 먼저 찾아내야지, 조장하는 사람을. 누가 찾아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저희 본청 병역조사과에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지금은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병역면탈을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또 이번에 개별적으로 한 애들은 찾아오면 컨설팅을 한다고, 병역 컨설팅을 한다고 해 놓고 찾아오면 구체적으로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이야, 병역면탈에 대한 방법이 발전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지. 그러면 이것을 감시하고 찾아내서 고발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병무청에 확실하게 구축이 안 돼 있다면 법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 있느냐 하고 제가 묻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뇌전증 수사와 관련해

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사이버수사과를 증원하는 등 과 신설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담 인원을 확대하는 이런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국정감사를 할 때 금년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병역면탈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한, 사이버상에 나타나거나 이것을 데이터를 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방법이 자꾸 발전하는데 우리 병무행정에서는 그걸 감시·감독하는 능력이…… 따라가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앞서가지는 못하고 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한기호 위원님 말씀한 것과 추가해서—이것과는 관계없고요—병역면탈 중에 가장 많은 면탈이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서 면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면탈하는 인원이 한 500명 되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데 국적을 바꾸어서 면탈하는 인원은 4000에서 5000명, 한 10배나 많은 것 혹시 차관님 알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는 몰랐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2년 전부터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집안이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면탈하고 바로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좌절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국적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못살아서 이렇게 이민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지금은 잘사는 자제들 또는 부유층 이런 데가 많아서 한 10배가 많기 때문에 5개 법안이 정비가 돼야 돼서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법과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법이에요, 국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니까. 그게 병무청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국방부……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법무부장관하고 행안부장관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21대에 꼭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좀 심각한 면탈 문제니까 필요성을 갖고 좀 하고 다음 소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법사위원이나 행안위 위원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정부부처가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걸 법을 상정도 그쪽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48쪽입니다.

병역의무자인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자료 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국방부 및 병무청도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그동안에 동의를 하다가 어제 늦게 신중검토 의견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 병무청 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추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부분만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관련해서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가져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뭐라고 보내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한기호 위원 뭐라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달라구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쪽에서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그 자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조금 수정됐을 경우

에 그 부분이 제때 행불자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원천 보유기관인 통신사한테 받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행불자 이런 것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자와 접촉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쪽 법률도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준해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어저께 퇴근 무렵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좀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심층 검토라는 게 뭐예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법률로 정보통신자에게 어떤 권한을 요청할지 여부를 저희가 법령 검토를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법률 제정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정사항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소위원장 김병주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원의 명단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병역의무자 소재를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행방불명에서?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오케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좋다고 했는데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자료 제공의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견이 없다가 어저께 늦게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추가 의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김병주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주소하고 거소 내지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은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는 이것이 어떤 정기적인 시간 단위로 정보가 오는데 이것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재 파악을 위해서는 한 번 더 보건복지부를 경유하는 것보다는 원천 보유기관인 통신사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보류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에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저희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관련 부처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한기호 위원** 51쪽에 있는 데이터 설명 좀 해 봐요. ‘전체 행방불명자 745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 51쪽, 나하고 다른가? 몇 쪽이에요?

○**전문위원 천우정** 51쪽 맞습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6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기호 위원** 설명 좀 해 봐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이것 가지고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호 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의무 이행, 통지서 교부, 통지 대기, 전시근로역 편입, 기타, 미색출,..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이 부분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법 할 때, 병무청 차장님도 그렇고 좀 더 이런 것 할 때 자체 내에서 심의를, 토의를 많이 하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맨날 조금 한 끼풀만 더 가서 질문하면 다 밑에 미루는데, 물론 밑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이런 토의에서는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밑에 답을 미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병무청에서 그만큼 심도 깊은 토의를 안 했더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본인이 대답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임재하입니다.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난 번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탈자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저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방불명자가 7450명이었고요. 그중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을 매칭시켜 본 결과 나타난 인원이 967명이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행방불명으로 병역 면탈자인데……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

○**한기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받

아 줬다 이거지?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받아 간 게 96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예.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색출을 한 결과 760명을 발견했고 214명은 저희가 통지서를 해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 이행을 했고 통지서를 교부해서 아직 이행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20명 그리고 주소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지하는 대기자가 352명 그리고 이미 어떤 다른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인원이 146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명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음에도 주소지라든가 본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미색출된 인원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 병무청이 전체 행방불명자로 분류되어 있는 7450명이 어디 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을 보니까 살아서 지금 돈까지 타 줬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한 것이 960명은 정리했다는 것 아니야?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의무를 이행시키고, 그러면 여기서 의무를 이행시켰다는 것은 병역을 입영을 안한 것을 입영을 시켰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처벌하지 않나?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지금 처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방불명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서 병역의무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못 찾아냈을 것 아니야?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저희가 매년 발견을 해서 이삼백명 정도는 이행을 하는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사실 발견한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가 행안부에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아 간 사람 때문에 돈을 받아 갔으니까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찾은 건데 이것 외에도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능동적으로 병무청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추후로 저희도 SRT 회원 가입이라든가 어떤 면허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것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기관의 협조 그런 한계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행불자 명단을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데 경찰과는 어떻게 협조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나? 이 재난지원금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찰도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저희가 일단 의무자 소재지를 파악해서, 의무자 소재지 파악이 안 되면 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소재지 파악을 일단 한 번 하는데 경찰에서 소재지 파악이 안 되면 그냥 중지,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더 이상 방법…… 이것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에 저희가 명단은 주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병무청에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좀 더 숙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60쪽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61쪽 하단을 보시면 국방부 및 병무청 의견으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

고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 개정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김종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병역명문가한테 해 주는 혜택이 뭐예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마스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의 공·능, 문화재, 여러 가지 시설, 주차시설 등 병역명문가 대상자 가족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까지 거의 대부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혜택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혜택이 뭐냐니까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할인 혜택이라든지 공·능에 입장하실 때 할인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원 이런 것 할 때 MOU를 맺어 가지고 병원비나 입원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할인,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것은 임의의 사항이에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병역명문가라고 우리한테 증서를 주고 패를 주고 했는데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빈말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국가에서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임의의, 지자체나 회사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저렇게 해 줄 수 있다, 그건 해 줄 수 있다는 임의라고. 해 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고. 그러나 국가적으로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있나 말해 보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여러 가지 저희가 병역명문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저희가 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이 분야 담당 업무이신 분 나와 보세요. 대답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장님.

○병무청기획조정관 홍승미 병무청 기획조정관 홍승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병역명문가는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한 분들에 대한 선양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보훈단체와 유공자와 좀 다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건국 이래 굳건히 3대가 지켜 온 그분들에 대한 명예, 그 부분이 저희 명문가 선양사업에서 가장 일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그 가문을 발굴해서 선양하고 명예심을 제고시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병역 이행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문화, 분위기 조성 그게 저희 명문가 사업의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예우 차원에서 저희도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의 자발적인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명예에 더하여 일부 예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법에 근거가 마련된다면 좀 더 국가기관, 또한 지자체 쪽에서의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문가 이것은 명예 차원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저 만나는 사람들 어떨 때 병역명문가라고 대개 자랑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아는데.

앞으로는 처우개선도 혹시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병무청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법으로 해야 될지 지방 조례로 해야 될지 그런 안까지 가면 그런 것들이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기호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76쪽입니다.

성실한 직무수행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

다.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국방부 및 병무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21년 5월 20일 법안 발의 후 21년 10월 14일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제116조(과태료)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복무기관 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김종호 사회복지요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요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2021년도에 개정이 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조항 내용을 추가로 수정 반영해서 복무기관 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에 공포 후 6개월 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현재 복무하는 사람은 6만 명 정도가 복무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6만 명 이분들이, 사회복지요원하는 분들이 실제로 군 복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 퍼센트나 돼요? 전혀 없어요? 다 100% 현역 복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충

역이라는 것 자체가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복지부 요원들이 희망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부를 현역 어느 분야에 활용할 건지는 조금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 신검을 해 가지고 급수를 잘못 매겨 가지고 복무를 안 해야 할 사람이 복무한 경우가 몇 명 있었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됐어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병무청의 엄연한 실수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해당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부 요원 급수 측정에 실수가 없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완료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9항,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0항 1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도 깊은 심의가 됐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5시 1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에 한해 수행 과정과 종료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6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5호를 6호로 고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설훈 위원 8페이지 보면 참고자료에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 디멘드 풀(Demand-pull) 방식 그리고 테크 푸시(Tech-push) 방식 이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 밑에 한글로 써져 있는 거랑 비슷한데요. 군의 무기체계 소요나 핵심기술 소요에 근거해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테크 푸시 방식은 민간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술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요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테크 푸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방부에 요구할 경우에 디멘드 풀 방식이고, 그래서 디멘드(demand)라는 걸 썼구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설훈 위원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이 테크……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래서 기술이 소요를 다시 푸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F+1~F+15’, F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것은 핵심기술은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무기체계 개발 장기계획에 따라서 핵심기술 소요가 되기 때문에 피스컬(fiscal) 연도, 다음 연도부터 길게는

15년까지도 과제 기획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미래도전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도전적인 기술을 저희가 받아서 바로 과제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F 연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설훈 위원** F는 시기가 없다 이거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기본적으로 과학자라고 그래야 되나 연구자들에 대해서 그 처지를 이해를 하고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를 할 경우에는 제재를 감해 주자, 이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토대로 해서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런 개념이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래서 점수도 낮춰 주고 70점 이렇게 하자는 데 대해서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3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12쪽입니다.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감항인증 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라는 21년도 국방예산안 부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16쪽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을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로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하며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자로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3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소위 심사자료 3권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 3권 1쪽입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음 쪽, 먼저 심사 경과와 관련해서 지난 2023년 5월 3일 날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2023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와 정부 측 의견은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제5조(위원회의 구성) 조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 의결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원회 유효기간은 지난 2018년 9월 14일부터 올해 2023년 9월 13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처리율이 99.9%로 기존 유효기간인 올해 9월 13일까지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 개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 등의 진정이 필요한데 70년대 이전 사건 등의 경우 유족이 없거나 고령이어서 진정제도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사건의 직권조사 확대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위원회 의결로 유효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사 입법례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본칙에 규정하고 대통령 및 국회 보고 후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도록 하는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동의하는 입장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복무 중 사망사고는 중대한 국가적 인권 문제이므로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진정사건이 모두 처리되었고 군 의문사는 군 조사본부, 군인권보호관 등에서 조사를 지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위원장께서 출석하고 계셔서 개정안 동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먼저 정부 측 안 듣기 전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희 위원회가 법률로 예정한 5년의 활동을 이번 9월 13일에 마치게 됩니다. 군에서 사망한 분들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저희 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유족과 군의 갈등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라면 이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군에서 사망한 분들의 80%가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진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경우나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직 기준이 굉장히 변화했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족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런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몇 년의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찾는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3년과 추가 2년의, 그런 정도의 활동을 예정하는 위원회 활동 연장 법안을 안규백 의원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돌아가신 분들, 군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제출하는 법률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국방부차관님, 국방부 의견은 됩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상위원회가 9월 30일 끝나면 여기서 하던 업무가 국방부 어느 조직에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차관 신범철 인사국으로 간다고는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직 의견을 낼 정도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번 6월에 국방부장관께서 출석하셔서 가지고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활동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조사본부에서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조사본부에 전사망민원조사단이라고, 민조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데 조사관들이 한 10명 정도이고 1년에 한 오륙십 건 정도의 조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찾는 그런 조사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군 내부에서 한다는 이런 점에서 그 결과를 객관적이라는 어떤 성질을 담보하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면을 갖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가 기왕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조사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 오히려 활동을 몇 년 좀 더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의혹이 있는 그런 사안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번에 하지 못하면 사실은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에 이 기관을 다시 만들려면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거의 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우려는 오히려 이 기관이 더 존속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기획재정부는 어디 와 있나요? 오늘 출석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군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내용

이 어떤든 간에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리라는 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억울하다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잘해 가지고 거의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유족들의 억울함이랄까 유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깐 그냥 넘어가는데, 말이 넘어가는 거지 그 한을 품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는 지금 ‘다 했으니깐 뭐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몰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또 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위원회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그때 없었던 위원회를 다시 또 부활시켜서 하게 되면 그건 비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 지금 다 마무리 못 된 사안이 있고 또 새로운 사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못 풀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더 연장을 시켜서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예산을 절약시키는 면이 있다. 기재부가 왔으면 논쟁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기재부가 안 왔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게요.

여기 3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 활동 현황 중에 직권사건이 66건이었는데 완료가 53건이어서 80%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9월 30일 날 종료가 된다고 하면 나머

지 부분, 20%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직권 사건이라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껴서 조사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사실은 저번 7월 말, 7월 31일 날 위원회 회의에서 8건 사건을 조사 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있는 조사 자료만 가지고도 사안을 해석하면 충분히 순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요청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 8월 말에 그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건들은 8월 말 회의 때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들이 남은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한 분이라도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지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종합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지난 달 말에도 이게 조사 개시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은 위원회 활동이 우선이고 보고서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시고.

저희들이 1956년, 55년 사건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55년에 30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122명이 미순직 상태로 있었고 이분들은 군 자료만 가지고도 436분이 순직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순직으로 요청할 만큼, 지금 순직이 돼야 되는데 순직처리가 안 된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없어진다면 없어지는데 이걸 국방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제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그걸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쨌든 군에도 굉장히 큰 짐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독립된 기구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

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지금 어쨌든 저까지 하는 그 위원회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가지고 했으면 이게 경쟁적으로 되면서 더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소위원장 김병주**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최초에는 5년 기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3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3년 했다가 그다음 연장을 2년 했습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하고 이번에 다시 3년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3년 만들어져서 임무가 다 안 돼서 2년 연장을 현재 한 상태고 그대로 가면 9월 30일 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9월 13일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9월 13일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사실 이번에 소위에서 토의를 하려고 올리긴 했는데 그러면 3년 연장 아니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한 것은 예산 때문일 텐데 1년 예산이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얼마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68억입니다. 다만 올해는 72억이에요. 왜냐하면 종합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는 시설물 복구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3억여원이 더……

○**소위원장 김병주** 1년 예산이 한 70억 정도 든다는 말이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68억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 연장을 해서 한다면 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한다면 명동 한복판에 좋은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1년에 한 10억여 원의 임대료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도 그렇게 더 많이 소요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역량을 잘 활용해서 해야 이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해체한 다음에 다시 구성하는 이런…… 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설훈 위원** 조사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조사 인력이 56명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경찰로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경찰, 검찰 복귀하고…… 9월에 그만둬야 되니까요. 또 다른 기관으로 가신 분도 있어서 지금은 5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직권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실제로 여기 이 법에 의하면, 본래 직권조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직권조사를 확대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법은 2018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당시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21년도에 개정을 해서 2년을 연장했어요. 개정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어요, 2년이면 충분하냐?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그 진정사건은 다 마쳤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영구적으로 하지 뭐 하러 이걸 또 법을 연구해요, 아예 영구로 바꾸지? 매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는 충분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연장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연장하지 언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3년이라고 하지 말고 영구로 하지?

그다음에 여기에 5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진정 사건 1787건인데 이 중에서 직권조사 45건을 포함할 경우 총 1832건 중에 1787건으로 97.4%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한기호 위원** 5월 23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면 못 한다’ 그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못 한다 그러면 계속 운영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제가 개정할 때도 ‘2년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충분합니다, 2년만 하면’…… 그런데 지금 와서 그 2년이 되니까 다시 연장하겠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도 의문사는 군 조사본부 여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규백 의원하고 저하고 군인복무기본법을 만들 때 군인권보호관 등에 대해서 이것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고정의 상설된 조직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특별위원회가 해체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면 계속 유지해야지요. 뭘 지금 또다시 3년을 연장한다고 하십니까? 그냥 계속하자고 그러세요.

우선 국방부의 조직 자체가 이제는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습니다. 군도 국방부도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장하겠다는 건 이것은 특별위원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블로그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수십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장해야 된다.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설 조직으로 일을 해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3년을 연장할 게 아니라 하려거든 한 10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21년도에 이것 연장해 줄 때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2년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매번 연장하자 또 연장하자…… 아니, 그러면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후에는 연장하자 또 안 할 것 같아요? 100% 또 연장하자고 합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재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문사위에서 하는 일을 군 조사본부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군인권보호관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자꾸 운영하자는 건 이것은 지나친 겁니다.

저는 이것 연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성일종 위원**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제가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건 접수를 할 때, 진정을 받을 때는 한 1000건 이내, 한 칠팔백 건 정도를 예정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군의문사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사건에 비춰 가지고. 그런데 1787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음 시작부터 한 2~3년은 좀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연적이었던 사유가 있었고.

그 사건은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정말 저도 애를 쓰고 조사관들 아주 재촉을 해서 다 마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장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군 사망사고를 들여다보니까 유족이 진정하는 이것에 의해서 예우가 달라지는 이걸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군에 가서 유사한 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어서 순직이 되고 어떤 분은 그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이걸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한번 일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족이 있든 없든, 신청을 했든 안 했든,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3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존속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영구적인 방식은 꼭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오히려 영구적으로 해 놓으면……

○한기호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또 연장하자 그러지, 안 하실 것 같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지금 3 플러스 2년은 제안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내가 아니면 못 한다’ 이

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 조직에서도, 조사본부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니깐요. 의문사위에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조사본부에서 또 하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노하우가 쌓였다니깐요, 당연히. 왜 나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조사본부는 지금 인력이 한 열 분 정도가 조사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건, 70건 정도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숫자로 하면 지금 있는 그 규모의 조사를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지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97.4%인데 남은 건이, 1832건 중에 1787건이 끝났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100건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조사본부가 1년에 50건 한다 그러면 2년이면 끝나요. 이것 3년 연장하는데 조사본부는 2년이면 끝난다니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족의 진정을 받아서 하는 사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일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여기 인원이 몇 명이예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110명인데 시행령 편제상으로는 84명입니다.

○성일종 위원 조사 인원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조사 인원은 56명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총 몇 명이에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전체로는 기간제까지 해서 110명이고 시행령상 편제로는 84명입니다.

○성일종 위원 110명인데, 혹시 육군이나 국군으로부터 파견받은 분은 몇 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아홉 분 계십니다.

○성일종 위원 9명. 이게 총 건수가 23만 2000건이네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23만 2000건을 기간으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50년에서 70년대까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70년 이후로 30%인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20%입니다. 여기 자료 맨 뒷면에 나와 있는데요……

○성일종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80%가 50년에서 70년까지인데 이게 기록이 있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기록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보셨다는 거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56년 것하고 55년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순직된 분들만.

○성일종 위원 오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55년하고 56년.

○성일종 위원 56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56년의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그 해를 선택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현재 다 보셨다 그랬지요, 아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56년 사건……

○성일종 위원 한 23만 3000건인가 2000건을 다 보셨다 그랬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얼마를 봤는데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희들이 진정 제기된 1787건하고 그다음에 직권조사한 66건, 66건은 그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 110명인데 1명당 1년에 얼마씩 이 사건을 다 보셨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56명이 1787건 했으니까……

○성일종 위원 아니, 56명이 아니지요, 110명이잖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여기저기서 다 파견하고 해 가지고 온 게 110명으로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110명이 1인당 1년에 몇 건을 처리했나 이거지요, 평균 건수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110명으로 하면 1년에 한 0.3건 정도 되나요……

○성일종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기록 가지고 검토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증언하고. 그렇잖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그런데 110명이 1인당 0.3건을 했다고 그러면, 사법조사해 가지고 별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원인규명하고 억울한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는 거잖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110명이 1년에 0.3건 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서 직원들 제대로 다뤘다고 생각하세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그 숫자가……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한 게 23만 2000건 중에서 몇 건을 했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진정사건 1787건이 중심입니다.

○성일종 위원 1787건의 진정사건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진정사건은 다 하셨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다 마쳤습니다.

○성일종 위원 진정사건은 다 됐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진정사건이 아닌 의문사라고 생각하는 건 뭔데 이렇게 많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위원회에 진정을 활동 시작 2년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모르고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냥 이러이런 사건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직권조사 권한이 생기면서 시작했던 조사가 한 20여 건 되고요. 그리고 또……

○**성일종 위원** 직권은 좋은데, 1787건인데 1787건이 조사 요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이것을 5년 동안 했다는 거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것은 몇 건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소위원장 김병주** 3쪽 도표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성일종 위원** 제가 못 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한 350건 정도씩 1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건 정도씩은 한 거지요.

○**성일종 위원** 한기호 위원님이…… 국가가 특별한 조직을 자꾸 갖는 것은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야 되거든. 특별한 기구가 있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 주고 국가의 시스템 안에 돌아가서 그 시스템 속에서 좀 더 가계 하는 게 맞지 비대한 특별한 조직으로 해서 계속 이끌어 가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체계나 법체계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

그런데 1787건의 요청이 있었던 거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조사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아까 제가 파견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그러니까 9명이라고 그랬나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군에서.

○**성일종 위원** 그러면 차관님, 이 1787건에 대해서는 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차관님 쪽으로, 국방부로 간다고 하면 이것을 다루는 데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왜냐하면 매번 이것을 이렇게 연장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병주** 국장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국장도 잘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조사본부로 가서 조사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장해서 수사할 것인가는 아직 조사본부로부터 보고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조사본부가 이 기능을 가져가는 기구네요, 그렇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기능을 안 가져도 지금 조사본부 직제상 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유족들의 진정을 받아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진정만 이루어지면 할 수는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있기 때문에 법적 기구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인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조사본부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마냥 우리가 이것을 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조사본부에서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좀 더 보강을 해서, 거의 다 일은…… 억울하다고 한 1787건은 다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본부에 9명 플러스알파해서 이 기능을 해낼 수 있느냐, 그걸 못 한다 그러면 이걸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5년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기능을 흡수해서 정상적인 국가기구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터미네이션(termination)시키는 게 나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못 해 봤는데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제가 한 말씀만 더……

○**설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직원당 조사 건수는 3.5건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3.5건 정도가 조사됐고요.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에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조사본부의 현재 직제로는 1년에 한 50건~70건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군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절하게 조사가 되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6년 사건에서 병사로 돌아가신 분 숫자를 파악했었는데 이백삼십육 분인가 됩니다, 순직으로 분류되었어야 할 분들이. 그런데 1996년하고 97년에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군의 육군에서 병·변사자들의 순직을……

○**성일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미안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병사 했을 때 순직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그러니까 96년, 97년에 군에서 이러이러한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질환이라고 써 있으면 순직으로 분류했어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준점들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쪽 조사를 한 천칠백팔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희들이 군에서 96년, 97년에 했던 그 질환에 해당되는 분들을 찾은 게 그때 누락된 분들이 236명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점은 이미 서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쉽겠네요. 그렇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성일종 위원** 인력이 필요한데 기준점 세우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기록만 보면서 이 질병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순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만들어졌네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그런 점에서는 군에서 그 작업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 하면 군에서 상당 인원을 파견받아서 집중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 미순직 3만 9000분 중에 한 3만 명 정도는 한 1년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 9000분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병사는 뚜렷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고사 또는 원인이 불분명한 이런 경우까지 다 하기에는……

○**성일종 위원** 케이스별, 사례별로 기준점들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1700건 이상을 하셨으니까 그것들은 다 돼 있으시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별 케이스별 어떤 기준하에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순직으로 구제를 하자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제가 봤

을 때는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위원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68억입니다. 올해는 72억이고요.

○**성일종 위원** 72억 그것이 다인가요, 지금? 인건비 이외에는 다른 것 없나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그 안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 조직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한시적으로 그런 기준점 세워 주고 딱 종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방부가 이런 기능을 국가에 순기능적으로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나는 기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기준점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계속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틀 안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국가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 차관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차관님이 검토할 시간은 없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검토해 왔어야 되는데, 이 법이 오늘 통과 안 되면 9월 며칠날 해체된다고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9월 13일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3일이잖아요. 사실 법안소위 통과된다 해도 전체회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오늘 사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요, 법사위 가고 본회의 갈 때 9월 13일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저는 국방부 대단히 못마땅해요. 이미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됐을 때 가정을 할 경우 그런 준비를 어디서 하고 얼마나 하고 이런 준비가 돼 있어서…… 그게 제일 큰 고려 사항이에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해요.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 잘해 왔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으면 해체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하면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방부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차관님이나 국방부 국장도 답변을 못 하니 이것 지금……

○**국방부차관 신범철** 국방부는 종료가 되면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것을……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종료가 되면 받는 게 아니라 인원들은 다 뿔뿔이 해산하고 국방부 내 자체 인원으로 충당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도 받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업무가 오면 인사기획관실에서 그걸 책임지고 조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책임지고 하는데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이 솔직한 얘기로 한두 달 전부터 인계 인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맨날 닥치면 하고 닥치면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보내 왔고 또 국방부도 당연히…… 9월 13일이라고 했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이채익 위원** 9월 13일 종료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부결로 의결하면 정부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이관받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신범철 차관,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는 미션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이채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송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옥주 위원**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자료 2페이지의 정부 의견을 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사망사고가 중대한 인권 문제이므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동안 보면 국방부가 이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이 우리 소위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을 인수인계받을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돼야지라는 게 은연중에 저는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위원회 활동이 좀 더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러한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직권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순직 처리를 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게 국가와 국방부의 마땅한 임무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군 사망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 상병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정부의 일원이거나 여당 의원이라고 하면 이럴 때 공교롭게도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부분들이 오해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국회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회 활동이 단지 과거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또 억울함이 없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3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2년 범위 내에서 더 연장을 한다 그러면 5년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55년과 56년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의혹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그 2년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5년 안에 해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중에 기간을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9월 13일입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 위원들도 전부 다 같이 끝나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되면 위원님들 다시 또 뽑아야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임명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연장하면 위원님들 임기가 다 끝나서 다시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실제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게 임기가 다 끝나는 게,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제가 법안소위에 있었으니까 법안소위에서 2년을 연장하면서 몇 번씩 다짐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하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래서 2년을 연장해서 만들고 했는데 이때 이 법 자체가 미진한 남은 부분들은 어차피 그 당시에도 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은 부분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속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일부가 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 한 거예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희들은 사건은 남기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사건을 남겨서 국방부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이첩이 되면, 제가 조사본부에다 직접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직접 얘기해 가지고 해결한 것도 몇 건 있잖아요, 제가 직접 분석하면서 경험한 것을.

그래서 조사본부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플러스알파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봐서 오히려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조사본부의 인원을 보완한다면.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3년을 연장한다는 자체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가지고 위원회를 연장하기보다는, 위원님들도 다 끝나요. 노하우를 가진 위원님들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업무 노하우를 쌓은 분들을 일부 국방 조사본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숙련된 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특별위원회를 연장 연장하는 게, 제가 지금도 21년도 기억이 분명한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놓고 이제는 ‘더 영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영역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본래 요청한 경우에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남은 것들, 조사할 것들이 더 많다……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님도 필요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가 더 있으면 이걸 소화할 수 있는지, 지금 행정적인 조직 외에 실제로 이것 하는 건 50여 명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일부만 보완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설훈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을 지금까지 잘해 왔고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을 더 줘 가지고 마무리 짓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 기간 내에 정리를 해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지금 인원도 백몇십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그렇게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도 대폭 줄여서, 이런 부분은 법안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겠습니까마는 부기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인원도 줄이고 기간은 법적으로 1년 연장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1년 뒤에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한다면 말 그대로 유종의 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는 것보다는 1년 연장하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그리고 뒤의 부분은 필요…… 1년 연장한다 하고 1년 사이에 위원회를 다 종결시킨다라는 심정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잠깐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 임기도 같이 연장되도록 돼 있어요. 임기 끝나고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희들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안규백 의원이 만든 법에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아니요, 연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한기호 위원 ‘이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연장되는 기간만큼 그 임기를 연장하는 걸로 본다’라고 명시해 놔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된 뒤에 연장하는 그때를 상정하는……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 법은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 한 것도 ‘시행 후 8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또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내 범위에서’ 지금 이게 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이 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또 연장해야겠다, 3년 된 다음에 2년 또 연장하겠다 그러면 자체 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들기면 또 연장하도록 돼 있어요, 이 법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자꾸 유효하겠다고 하는 게…… 조사본부에서도 실제로 남은 법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한정 연장시키겠다고 이렇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설훈 위원 글썄,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가 있는 거니까, 법안소위에서 이 기한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장 기간은 1년 연장하고 1년 사이에 위원회를 정리하는 기간으로 주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 생각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통과시킵시다.

○한기호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조직 내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군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군이 봐주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또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사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2년 전에 연장할 때도 저도 법안소위에

서 굳이 연장할 수 있는가 그때 따졌었고요. 그래서 2년을 연장한 것이 사실이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조직 속에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군이 예전에 사실 불명확한 사망이 많았고 그게 규명이 안 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진정 사건에 대해서 주로 했고 이제는 정부가 진정 사건 말고도 전부 다시 되짚어 봐서 억울한 게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사본부나 국방부나 이런 준비가 완전히 돼 있으면 저는 지금 넘기는 게 맞다고 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서……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준비상태가 좀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는 70억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인권위원회에서도 연장을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이 사실 이것을,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군으로 넘기는 순간에 군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요. 군에서 이걸 판명을 하더라도 미처 신뢰를 못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거지요. 위원회가 하면 제일 군의 입장도 좋은 거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면이 있고요.

송옥주 위원님이 우리가 착안 못했던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을 때, 또 사실은 저는 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혀 정쟁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또 다르게 정쟁으로 갈 수가 있는 면이 있고 하니까 저도 이것을 없앤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좋겠다고 설훈 위원님 제시한 것처럼 없애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 안규백 의원님 안대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하되 1년 후에는 완전히 종결한다, 더 이상 연장 토의도 없다. 그때 완전히 그 시점에 맞추어서 국방부는 인계받을 준비를 사전에 한 3개월 전부터 그렇게 하도록 아예 여기에 못을 박으면 위원회를 없애는 것에 전체 동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단계가 되니까 국방부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또 그 전에 미진했던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1년이면 다시 뽑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인력을 연장하는 그런 것들로 하게 되면 업무의

연장선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국방부나, 실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히 위원회를 줄 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도 단계별로 가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지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하나 좀 물어볼게요.

2년 전에 연장된 거라면서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렇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게 터미네이션(termination) 시점이 9월 말이에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9월 13일입니다.

○성일종 위원 9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9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끝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법률 개정이 안 되면 끝나는 거지요.

○성일종 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종료하는 준비는 다 하셨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하고 있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보고서 발간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저 조직에서 이게 끝나는 걸 다 알고 계셨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확인을 지금 해 봤습니다. 이게 저희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보고를 미리 받지 못했는데 국방부조사본부에 군사망민원조사단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요. 이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20명으로 편제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관련 업무를 해 왔고 여기에서 이관이 되면 그 조직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임기 종료가 된다고 해서 편제를 보강 중에 있다고 조정된 걸 받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제가 국방위를 와서 위원장님 뵈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감사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성실하게 이것을 어쨌든 잘 이끌어 오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하고의 약속인 거거든요, 언제까지 끝내겠다 해서 2년 더 연장을 했으면, 그래서 우리 한기호 위원님이 국방위에 3선 내내 계속 계셔 왔잖아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최고의 전문가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국방위에 오셔 가지고 국방 전문가니까 이걸 지켜 오셨는데……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9월 13일 날 종료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종료에 대비해서 인수를 받아 올 것이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또 국민 일각에서 봤을 때는 위원회가 많으니까 세금만 자꾸 축낸다라고 하는 비난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이든 2년이든 연장을 해놨을 때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이것 그냥 자리만 더 오래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다, 그러니 아예 그러면 종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넘겨줄 준비가 너무 부실하고 일이 안 됐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천칠백팔십몇 건을 다 조사를 했고 기준점도 잡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넘겨줘도 웬간하게 무능하지 않고는 이것 못 해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연장해 온 것 이런 걸 종합을 해 보면 이 시점에서 넘기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사실 넘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한기호 위원님, 아까 제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한기호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여기 이 파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직 자체가 지금도 수행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앞으로 일할 걸 전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 종결된다고 해서 이미 이쪽에서는 종결 보고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앞으로 연속돼서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연장한다고 해서…… 이것은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된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한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소위의 전통은 사실 우리가 거의 이견이 없을 때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

○설훈 위원 보류하면 자동으로 이 위원회는 소멸되게 돼 있는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꼭 하고 싶은데 아마 소멸되고 나면 몇 년 안 있어서 또 위원회 만들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56년도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솔하게 많은 원통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족들도 아직 남아 있고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때 하면 되지요. 국가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위원회를 존속시키지 말자는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안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지요. 기록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낭비 안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저도 이걸 기록을 남겨야 돼서, 제가 4시에 사실 월남전 이것 토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안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국방부가 이걸 받을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고 느껴져요. 일단 보류가 됐으니 그러면 9월 13일 날 위원회가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인원도 증강을 해야 되니까 그 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 25일에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떠한 자세로 인수를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국방위 전체회의에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때 미진하다면 법안소위를 다시 한번 9월 달에 올릴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안은, 아마 우리 위원님 모두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 하느냐의 문제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회가 하든 국방부가 맡아서 하든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는 예산도 따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일종 위원 1분만 주세요.

○소위원장 김병주 하시겠습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도 한 말씀만 남기고……

○성일종 위원 기록만 좀 남길게요.

○소위원장 김병주 좋아요.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우리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인 김병주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국방부는 아주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23만 2000명의 죽음 앞에서 국가가 억울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치나 이런 것을 다 잡았으니까 물려받아서 미진한 것 조사했었던 그 기법대로 다 검토하고 오셔서 가지고 정말 억울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가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승계해서 조사도 더 할 것 있으면 더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직, 모든 것을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좀 많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955년, 56년 사건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쩌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군인의 사망,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정리 이런 것들을 그 성격이 어떤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6년만 해도 그냥 군에서 작성한 기록만 가지고도 436명이 순직으로 심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아마 군인사법 54조의2제2항을 적용하면 거의 한 90% 정도는 순직으로 다 예우가 되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관련해서 일단은 모범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위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위원회가 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군에서…… 그런데 군 안에 있더라도 좀 더 독립적인 기구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의 어떤 죽음 문제를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군에서 한 것의 재조사거든요.

그래서 군으로부터는 좀 독립되고 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구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 여하튼 저희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 의식을 잘 고려하셔서 군인의 사망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는 데에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한기호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병주 마무리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1분만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1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인원소요를 제기해서 예산안에 넣어 주시면 그 예산안에 반영해서 인원을 계약직으로 들여오든지 해서 충분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와서 계속 일을 해 가지고 이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말씀하신 대로 25일까지 저희가 초안 준비해서 국방위 개최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25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할 때 위원장님도 말씀……

여기까지 하시지요.

25일 날 거기에 대한 안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또 발의한 안규백 의원님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미진하다면 9월 초에 빨리 법안소위를 열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인계인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1년 정도는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종료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종료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인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명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예산도 추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회 할 때는 70억이었는데 아마 조사본부에서 하면 한 이삼십억이든 얼마든 좀 줄어든겠지요, 인원이 덜 그렇고 사무실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예산까지도 충분히 반영돼서 스무스하게 임무 수행이 연장되게, 아마 인수되면 9월 13일부터 12월 달까지는 예산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기존 예산. 그런 것도 어떻게 할지까지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늘 업무를 5년 후, 1년 후, 최소한 3개월 후를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한 달 후에 이게 안 됐을 때에 대한 구체화 정도가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여기서 제가 아까 국방부 차관님께 의견을 물은 것은 국방부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재부 의견보다도.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상 없습니다’ 하면 스무스하게 크로스가 되는데 지금 그걸 제시를 못 하니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25일 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정확히 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8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소위 심사자료 4권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 관련해서 지난 2023년 2월 22일 날 우리 소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수석전문위원은 심사경과, 검토보고 요지, 쟁점사항, 법원 판시 사항, 제정안 19대, 20대에 발의되어서 폐기된 사항 등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 3쪽의 당시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소위 심사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참전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6·25 참전용사의 희생도 보상하는 것이 맞으나 먼저 문제 제기가 된 월남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당 지급청구권, 시효 등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 및 정부 의견 등 법리 해석 문제는 동 특별법 제정으로 해소되는 부분으로 지급 방안, 예산 등은 이미 다 논의가 된 사항으로 이번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면 4월 중 소위를 열어서 결정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서는 6·25 전쟁의 치열성과 희생을 감안 6·25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여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고 예산 당국의 정확한 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수당의 소관이 국방부인지 보훈처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 범위도 챙겨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결정하려면 단시간 내에 처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헌신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 주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소요 예산 규모가 천문학적인데 국방부, 기재부의 태도가 안일하고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제대로 된 법안으로 시행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국방부의 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오늘 소위에서 대다수가 취지에는 공감을 했으며 설훈 위원님이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으므로 각 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송갑석 위원님께서서는 월남전 참전 인원이 약 19만 명으로 전투군무수당은 국방부 소관이고 참전수당은 보훈처 소관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보훈처도 참석해야 하는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어려운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서는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며 6·25 참전자도 별도 법안으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과거 판례를 감안하여 전투군무수당이 포함된 법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부의 기초자료 준비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병헌 위원님께서서는 법안 통과 시 다른 보훈 단체의 유사한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국가재정 측면에서 총량적으로 보훈예산을 계상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검토보고 등 자료는 지난 2월 22일 소위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이것으로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시 군인보수법상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군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파견군무수당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였고 2005년 전수조사 결과 해외파견수당 정상 지급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판례도 전투군무수당 청구권을 미인정하고 해외파견군무수당을 정상 지급했다고 판결한 것과 헌법소원, 그러니까 월남전 전투군무수당 미지급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현재의 각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설훈 위원 이 법안은 청문회까지 거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법안이고 오래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는 1963년에 베트남전쟁 참전을 앞두고 군인보수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트남에 참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갑자기 전투수당을 담은 군인보수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전투수당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63년 군인보수법을 제정해 가지고 만든 전투수당 규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수당도 만들었습니다. 해외수당도 만들고 전투군무수당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수당 만들었으니까 전투군무수당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전투군무수당을 주도록 이미 63년도에 군인보수법을 제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전투요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의료지원단과 태권도 교관을 파견을 했고, 그래서 비전투요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전투수당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결국 전투요원이 들어가게 되고 5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월남전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전투수당을 안 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 미국 측에 전투수당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국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끝났습니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뒤늦게 이 전투수당을 자기들이 안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때 이후로 전투수당을 정부가 돌려 달라, 다시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당연히 전투수당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됩니다. 풀자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풀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반대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께서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투수당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3년도에 전투수당이 들어가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투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주겠다고 한다면 다른 형식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했고 5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전투가 아니다’ ‘장소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했는데 전투수당 안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투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들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전투수당을 줘서 그동안 수십 년 만에 걸친 이 싸움이 정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법사위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제가 모르는 걸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설훈 위원님께서.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제가 정무위 간사하고 있을 때에 브라운각서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전투수당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와 가지고 월남 참전하신 우리 선배님들한테 돈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레터를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에 전투수당을 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없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서류는. 공식적인 레터를 아마 원하시면 제가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단락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찌 됐든, 제가 그래서 정무위에 있으면서 80세 이상 드신 분들이 워낙 국가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수당에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더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법안을 내서 통과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8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을 더 받고 계시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를 시켜 냈는데, 어찌 됐든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얽매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짤 때 난리를 퍼서 4만 원 올렸나 그랬습니다.

국회에 와서 좀 더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법안이 쉽지가 않으면…… 차관님, 국방부가 좀 더 나서시고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래도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문제는 좀 더 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성일종 위원 그런데 법의 체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고 또 전에 어떻게 이게 토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큰 틀에서는 참전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예우는 이 법이 어려우면 다른 형태로라도 좀 더 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검

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브라운각서는 한국군 현대화와 한국에 경제 지원을 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게 이행됐습니다. 거기에 전투수당을 준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전투수당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63년도의 법에는 전투수당을 주도록 해 놓고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투수당을 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 실패로 인해서 결국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고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 한 겁니다. 법에는 분명히 전투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못 한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해외근무수당으로 얘기했는데 해외근무수당 다르고 전투근무수당 다릅니다. 비전투요원은 해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임했던 사람은 전투수당을 받아야지요. 그게 안 된다면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동안에 법이, 정부가 이것 해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전투수당을 횡령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누군가 횡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위원이 두 가지 법안을 냈는데 하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과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두 가지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두 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그동안에 못 했던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선배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봤습니다. 전투수당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미국 호주 필리핀 태국 이런 데를 제가 쭉 봤더니 저희가 수당으로 보면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시스템하고 다 합해서 보니까 그렇지 해외 파병에 대한 전투수당

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상위에 랭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 다른 나라들만큼 기초생활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주는 게 적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른 항목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설훈 위원** 그런데 얼마나 정확히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은 예를 들 필요도 없고요. 미국 예를 들 필요도 없고 호주와 뉴질랜드 예를 들면 뉴질랜드가 2008년에, 그동안에 비전투 파견으로 참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에 법을 바꿔 가지고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호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게 포함된 겁니다, 같이. 2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설훈 위원** 일단 월 2200불 주고……

○**성일종 위원** 예,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참전수당으로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엄청 많아요. 의료 혜택 100% 면제, 전기료·전화료 40% 면제, 자동차등록세, 가스세 이것 다 합치면 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월 400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가 그런 상태입니다. 뉴질랜드도 비슷합니다.

○**성일종 위원** 280만 원 정도……

○**설훈 위원**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들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가 못 했던 일을, 전 정부들이 못 했던 일을 지금 하자는데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은 꽤 들어갑니다. 예산은 어떤 정권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3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게을리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이 들어가야, 그리고 국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바로잡아도 바로잡는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2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목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먼저 국방부차관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하고 한기호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케이스가 사실은 참전명예수당이고요, 그것을 미국은 월 234만 원, 호주는 227만 원, 뉴질랜드는 19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상을 했지만 금년 기준으로 39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성일종 위원 지방 정부 합하면 한 70만 원 정도가 돼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매칭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는 게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매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손들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을 올리자는 거예요. 그것을 좀 특별히 올려서 가는 게 맞겠다……

○설훈 위원 지금 그 논의를 할 사안이 아니고 이 법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안 하면 또 나옵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참전용사들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 후손들이 또 낼 거예요. 왜?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국가재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편법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빚입니다. 빚인데 빚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갚고 지금 계속 떼먹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선거를 할 때 양쪽 캠프에 월남 참전자들이 다 있습니다. 가서 바로 ‘전투수당을 내나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양 후보가 전부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찾아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내가 후보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과월장병들에 대해서 전투수당을 안 줬냐? 진상을 규명해서 보고해라’ 해서 보고한 것이 2005년도 이 문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방부 가지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한 문건이에요. 이 문건에 명시를 해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다 여기에다가 써 놔

요.

우선 처음에, 브라운각서 얘기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세요. 브라운각서 체결을 66년 3월 7일,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 간의 최종 합의문을 추가로 합의를 한 게 3월 4일이었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바꾸지요. ‘일당’이라는 것을 ‘해외근무수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브라운각서에 합의를 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금 미국이 주고 있는 게 적다’, 보수가 적다라고 얘기하니까 하사를 1불 50센트에서 1불 90센트로 올려주고 병장을 1불 20에서 1불 80센트, 상병은 1불 10에서 1불 50, 그래서 통상 병장이 54만 원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시지요, 54불 받았다고? 일병은 1불에서 1불 35센트 이렇게 브라운각서에 명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른 참전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그러면 다른 참전국들에는 얼마나 줬냐? 남베트남군에게는 우리의 하사인 경우에, 우리 하사를 100이라고 줬을 때 81을 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우리 하사의 291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는 것의 약 3배를 줬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303을 준 거예요, 우리를 100이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느냐? 당시에 참전한 군인들이 실제로 소수의 인원만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그다음에 맹호부대, 4개 부대가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 보수를 주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준, 브라운각서에 합의한 걸 다 줬냐 안 줬냐 하는 문제에서는 다 줬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수당을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전투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의 이 전투수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됐냐, 노무현 대통령도 이 얘기를 알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을 대폭적으로 올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려준 게 당시에 5만 원을 2배인 10만 원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지금 39만 원까지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월남참전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급한 돈이 약 13조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게 국가가, 사실은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사실은 불복을 합니다. 불복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이 소송을 내서 1심, 2심, 3심까지 전부 다 이분들이 패소하고 국가가 이기지요. 이것이 무려 네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네 번을 거쳤었느냐, 월남참전전우회장이 출마할 때마다 이걸 공약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 공약으로 낼 때마다 헌법 이걸 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거예요. 결국은 법적으로는 전투수당이라는 말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홍철 위원이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찾아와서 또 얘기를 했고 저도 간사였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홍철 위원장도 본인도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헌법소원을 내라’ 이래서 헌법소원을 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파월장병의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조사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제 월남참전전우회 회장단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률적으로 참전수당을 달라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다른 방법을 해 달라’ 하고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21대 국회의원 되자마자 어디를 찾아갔냐면 월남전참전자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왜 여기를 찾아갔냐? 제가 이 건 때문에 19대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돼서 현장에서 이분들을 수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21대가 되자마자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건 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대폭적으로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에 35만 원이었던 것을 ‘제 임기 중에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1차 연도에 4만 원 올려서 39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게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파격적으로 우리 국방위원회하고 보훈부하고 좀 더 해서 100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자’, 이건 또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훈부 업무입니다. 우리가 참전전투수당 이러니까 국방위원회가 논하지, 이건 우리 업무도 아니

예요.

그래서 박민식 장관하고 해서 이걸 대폭적으로 올리자, 그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승계를 하자, 그래서 가족들한테 승계하는 것도 전액을 승계하겠다 그러면 6·25 참전하고 같이해서, 어차피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이 항목 속에는 6·25 참전자와 월남참전자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올리려면 세트로 같이 돼야 되니까 가족에 대한 승계를 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승계하는 법은 내가 발의해 주겠다……

그래서 어제 그 월남참전전우회 회장단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저희들은 더 이상 전투수당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데도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걸 법정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대폭적으로 올려 달라……

두 번째, 가족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건 제가 법을 발의하고 또 명예수당 올리는 것은 보훈부하고 협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월남전에 가서 싸워서 피를 흘리고 5000여 명 이상이 전사하고 한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겠다고 하겠습니까? 도와드려야지요. 도와드리는데 국가의 형편상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자는 거지요.

이것을 마치 ‘한기호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지, 지금 상태는 법리적으로 따지거나 이분들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통과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네 번씩 나왔는데, 헌법재판소 기각했는데. 그래서 파월장병 전투수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예우를 할 거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한기호가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제 전화번호까지 넣어 가지고 전국에 돌려서, 이건 옛말로 하면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예우와 그분들에 대한 것을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훈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1963년에 군인보수법을 제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법을 제정하면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할 것을 예상하고 한국전쟁이 끝난 10년 뒤에, 10년도 훨씬 지난 뒤에 이 법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베트남전에 참전할 것이기 때문에, 참전하게 되면 전투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걸 예상하고 전투수당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 법안을 제정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못 준 전투수당을 주자 이거예요.

지금 전투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저는 그 얘기의 논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투수당 안 준 건 틀림없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왜 전투수당을 안 주냐 이거예요. 전투수당이 뭐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면 전투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책임이 있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빨리 면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얘기가 안 돼요. 빨리 해결하고 이걸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투에 참여했는데 전투수당 안 줬다?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베트남전쟁에 전투수당 안 줬다고 그러더라. 전투를 했잖아, 5000명 이상 죽었는데’ 그걸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무리 법리를 갖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가 잘못됐구먼’ 이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개념일 거라 생각합니다. 판단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냥 안 줘야 된다고 계속 해서 논리를 펼 겁니까?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반대 안 한다고 그러지만 결론은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상태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논리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전투수당을 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전투수당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안 준다면 누구누구 개인 고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안 하겠다고 합니까?

○**한기호 위원** 우선 전투수당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법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설훈 위원** 법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는, 제정법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다 들었어요.

○**설훈 위원** 법을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기다려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25 참전자는 전투수당 안 줘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결국은 6·25와 월남전을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게 월남전 참전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당시의 경제적인 사정에서 우리의 공급과 그리고 미국이 주겠다고 한 돈을 다 드린 거예요. 브라운각서에 명시한 대로.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는 돈을 떼어먹었다’ 이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재정 상태가……

○**설훈 위원** 본 위원이 떼어먹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세요?

○**설훈 위원** 아니, 떼어먹었다고 그러니까 하지요. 내가 뭐 떼어먹었다고 얘기했습니까?

○**한기호 위원** 떼어먹긴 누가 떼어먹어? 아니, 밖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위원장 김병주** 일단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투수당이 법적

으로 안 되니 결국은 그만한 이상의, 상당의 예우를 해 드리자 이걸로 가자는 거지요. 오죽하면 우리 참전전우회 회장님이 회장단을 데리고 어제, 제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오셨어요. 본인들이 오셔서 ‘우리도 법리적으로 다 검토를 했다. 전투수당을 달라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도 이제 전투수당은 더 달라고 안 한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저한테 와서 한 얘기.

○설훈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예?

○설훈 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전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누구 얘기를 듣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러면, 여기 월남참전전우회가 2개 아닙니까? 2개니까 그런 얘기하시겠지요. 전우회 장님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안 되니 실제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건 뭐 누구 얘기를 가지고 믿어요?

저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는데, 어제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동영상을 찍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찍어서 근거로 남기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동영상 찍은 것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설훈 위원 누가 정쟁으로 몰고 갑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 정쟁이지 이게 뭘니까, 지금?

○설훈 위원 무슨 정쟁입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걸 우기니까 정쟁……

○설훈 위원 법리적으로 안 된다면 법을 만들면 되는데……

○한기호 위원 정쟁이지요.

○설훈 위원 아니, 법을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법을 못 한다니까요. 전투수당은 이미 해당이 안 된다고.

○설훈 위원 법을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지, 이것 벌써 판결이 났잖아요.

○설훈 위원 판결이 난 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뭐가 다음 문제입니까? 헌법재판소 판결 난 것 이것 다 무시하고 하자는 거예요?

○설훈 위원 아니, 새로운 법을 정리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설훈 위원 대법원 판결하고 달리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 되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 전투수당은 안 된다고……

○설훈 위원 전투수당 주는 것을 법을 만들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우를 해 드리자는 거지요.

아니, 정쟁으로 몰고 가세요?

○설훈 위원 아니, 정쟁은 무슨 정쟁입니까?

○한기호 위원 혼자서만 월남참전자……

○설훈 위원 전투수당을 주는 것으로 법을 만들자는 건데……

○한기호 위원 설훈 위원님만 월남참전자들을 챙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훈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한기호 위원 저도 그러잖아요, 해 드리자, 예우해 드리자, 어떻게든지 이분들 도와드리자. 왜 그런 거예요?

○설훈 위원 말은 그러면서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법을 새로 만들자는 건데……

○한기호 위원 아니, 올려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 이것은……

○설훈 위원 아니,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설훈 위원님, 왜 그러세요, 진짜?

○설훈 위원 왜 자꾸 정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정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잠깐.

○한기호 위원 아니 설훈 위원님, 왜 그러세요?

○설훈 위원 아니 한기호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한기호 위원 이것은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설훈 위원 아니, 무슨 정쟁이에요?

○한기호 위원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훈 위원 정쟁이라는 근거를 대세요. 무슨 정쟁이에요?

○소위원장 김병주 설훈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은……

○설훈 위원 아니, 무슨 정쟁이 있다고 정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채익 위원 회의를……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 법안에 대한 토의지 사실은 이것은 정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뜻은 같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대우해 주고 하는 건데 의견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투수당에 관계된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과 참전수당을 좀 올려서 대우하자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 오늘 이거 계속 토의해도 결론은 여기서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오늘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 정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지요. 급하면 정쟁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좀 캄 다운(come down)시키시고요.

○설훈 위원 지난번 국방부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금 지급 시 검토 방안’ 이해서 1안, 2-1안, 2-2안, 3-1안, 3-2안, 5개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 지급 방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정쟁이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건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쟁이라서 안 됩니까? 정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안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갖다 내면 됩니다.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30여만 명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기호 위원 전투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안 되는……

○설훈 위원 말이 성립이 안 되든 되든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왜 소리 지르세요?

○설훈 위원 소리 안 지르게 돼 있습니까! 억지를 왜 부리세요, 억지를?

○한기호 위원 누가 억지를 부려요, 설훈 위원님이 억지를 부리시지. 그러지 마십시오.

○설훈 위원 참내, 국방부하고 다 합의해서 안까지 만들어 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예우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자는 거 아닙니까.

○설훈 위원 예우하는 방법이 이렇게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기호 위원 안으로 나왔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설훈 위원 안으로 나와도 안 된다는 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기호 위원 아니, 민홍철 의원님도 억울하신 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기각까지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지금……

○설훈 위원 새로 우리가 법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한기호 위원 헌법 위에 우리가 법을……

○설훈 위원 헌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기호 위원 헌법 위에 법을 만들습니까?

○설훈 위원 아니, 그건 그거하고 다른 사안에 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다선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됐습니다. 하여튼 두 분 모두 월남전 참전용사를 위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느껴지고 저희들도 다 느껴집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병 주 설 훈 성 일 중 송 갑 석
송 옥 주 이 채 익 한 기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병 주
전 문 위 원 천 우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 관 신 범 철
법 무 관 리 관 유 재 은

인 사 기 획 관	오	영	대
보 건 복 지 관	김	은	성
동 원 기 획 관	염	주	성
군 수 관 리 관	이	갑	수
군 사 시 설 기 획 관	천	승	현
계 획 예 산 관	신	태	복
첨 단 전 력 기 획 관	황	정	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안	유	진
병무청			
차 장	김	종	호
기 획 조 정 관	홍	승	미
병 역 자 원 국 장	임	재	하
입 영 동 원 국 장	장	현	서
사 회 복 무 국 장	최	구	기
방위사업청			
차 장	강	환	석
방위산업진흥국장	김	진	홍
국방기술보호국장	권	영	철
정 책 조 정 담 당 관	신	현	승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이	창	우
품 질 연 구 본 부 장			
군 사 망 사 고	송	기	춘
진 상 규 명 위 원 장			
군 인 공 제 회	김	용	우
기 획 조 정 실 장			